

碩士學位論文

朝鮮後期 濟州鄉校 運營實態

指導教授 金 東 栓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吳 松 喜

2002年 2月

朝鮮後期 濟州鄉校 運營實態

指導教授 金 東 柱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10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提出者 吳 松 喜



吳松喜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1年 12月 日

審 查 委 員 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국문초록>

朝鮮後期 濟州鄉校 運營實態

吳 松 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指導教授 金東柱

본 논문은 조선후기 제주향교의 운영과 실상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조선은 유교이념 보급과 사회제 유지에 위하여 전국 군현에 향교를 설립하고 교화정책을 펴나갔다. 향교는 문묘를 중심으로 제례를 수행하고, 명륜당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방 양반들이 출입하여 활동하던 곳으로 정치·사회적 기구으로써 기능한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향교를 이해하는 것이 향촌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제주향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설치시기에서부터 향교 직제와 교생, 경제기반, 양반유생들의 향촌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그 시기를 후기로 한정시켰으며 정의·대정향교는 제외시켰다. 제주향교의 소장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주향교의 운영과 실상을 살펴보고 제주향촌사회의 일면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제주향교의 설치시기는 태조 원년과 태조 3년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제주향교건학비기(濟州鄉校建學碑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에서 태조 원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치된 후에도 화재나 지리적 이유 등으로 여러차례 이권하였음을 이권기문이나 상량문(上樑文)등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조선초 교수관의 파견 등으로 교육활동을 시작하여 조선후기 제주향교에는 「각면훈장설치절목(各面訓長設置節目)」을 발급하고 삼읍과 각면에 훈장을 두어 권학에 힘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처럼, 고강문제와 관련하여 균역을 회피하는 청금유생이 생겨나고 청금록을 따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향교소장 청금록을 조사하여 그 청금유생수를 파악하였다. 또한 향교에 소장된 여러 절목류를 통하여 제주향교의 실제 운영을 살피고, 접생을 뽑고 고강을 실시했던 구체적 내용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향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였는데 향교전과 노비 등이 그것이다. 제주향교가 소유하고 있던 향교전은 조선후기 잘 운영되지 않아 폐단이 심각해졌고 노비들도 유리될 형세에 이르렀다. 이 외에 목사의 섬학전(瞻學田)이나 유전(儒錢)을 각출하기도 했으며 대부분의 향교수입은 향교유지와 제례수행에 쓰여졌다.

이런 향교를 중심으로 양반유생들은 향촌활동을 할 수 있었다. 격문을 발송하여 의병을 일으키거나 향교 이권에 대한 상소문 등으로 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향교는 제례를 수행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향촌기구으로써 지방 양반유생들의 정치·사회적으로 이용되어 그들을 결집시킬 수는 있는 근거지였다.

※ 본 논문은 2002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머리말	1
II. 濟州鄉校의 設置와 移建	3
III. 鄉校의 職制와 校生	11
1. 職制 및 構成	12
2. 校生과 考講	21
IV. 鄉校의 經濟基盤과 運營	34
1. 鄉校田과 奴婢	34
2. 財政運營	47
V. 儒生의 鄉村活動과 社會的 機能	52
VI. 맺음말	56
참 고 문 헌	59
<Abstract>	63



표 목 차

<표1> 제주향교 청금록 작성시기별 입록자	25
<표2> 각면별 유생수	26
<표3> 조선시대 향교전	36
<표4> 조선시대 향교노비 수	46



I. 머리말

본 연구는 조선시대 인재양성 및 지방민의 교화 등 향촌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향교에 대해서 구명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은 사회체제 유지와 군현 통치를 위해 유교이념 보급에 힘썼고 아울러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서 향교를 설치하였다.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조선 성종대에 모든 군현(郡縣)에 설치되었다. 또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으로 유교이념을 보급하기 위하여 전국에 세워진 관학(官學)으로써 인재양성과 향촌을 다스리기 위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향교는 문묘(文廟)가 있던 교화의 중심지로 제례를 수행하고 학생을 가르치던 교육기능만을 수행한 것은 아니다. 지방양반들이 출입하고 활동하여 공론(公論)의 소재지로 정치·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향촌기구였다. 그러므로 향교는 교육제도의 일부로서 각 지방에 설립되었지만 향촌의 정치·사회기구로써 기능한 측면이 강하였다.

그리고 향교에 대한 연구도 교육적 기능면을 많이 강조해 왔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기구로서의 역할에 연구의 초점을 두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향교를 연구해 왔다.¹⁾ 향교에 소

1) 조선시대 향교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姜大敏, 『韓國의 鄉校研究』, 경성대 출판부, 1992.

金龍德, 「朝鮮後期 鄉校研究」, 『韓國史學』 5, 1983.

宋贊植, 「朝鮮後期 校院生考」, 『國民大論文集』 11, 1977.

尹熙勉, 「朝鮮後期 鄉校研究」, 一潮閣, 1990.

李建衡, 「朝鮮王朝 鄉校의 興學政策」, 『大邱教育大學論文集』 제5집, 1969.

李成茂, 「朝鮮初期의 鄉校」, 『漢坡李相玉博士回甲紀念論文集』, 1969.

李範稷, 「朝鮮前期의 校生身分」, 『韓國史論』 3, 1976.

——, 「朝鮮前期 儒教教育和 鄉校의 機能」, 『歷史教育』 20, 1976.

장된 사료를 발굴하고 향교기문(鄕校記文)을 번역, 정리하여 이전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²⁾

이 논문에서는 제주향교의 소장자료를 토대로 운영과 그 실상, 제주향촌 사회의 일면을 이해하고자 제주향교 설치에서부터 인적구성과 운영, 경제기반, 유생들의 활동 등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고문서(古文書), 절목(節目), 청금안(靑衿案), 유안(儒案) 등의 사료로 향교의 생생한 실상을 파악하려고 주력하였고, 다만 향교의 사료 대부분이 조선 후기 것으로, 그 시기를 조선 후기로 한정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하려고 한다. 제 2장에서는 제주향교의 설치와 이설에 대해서 이건기문이나 상량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설치시기와 그 후에 자주 이설했던 이유와 그 의미를 향교에 소장된 사료로 알아보고, 제 3장은 각 읍지류 등을 중심으로 향교의 인적구성을 살펴보고, 교관과 교생과 관련하여 교수의 파견에서 부터 향교에 소장된 절목류를 이용하여 훈장설치와 당시의 교생문제, 실제적인 고강내용을 살펴보겠다. 제 4장은 경제기반 중 향교전과 그 외 부수적인 수입 등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재정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향촌 유생들의 활동을 그들의 의사표출의 수단이었던 상소나 격문 등으로 살펴보았고, 향교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짐작할 수 있다.

全昞穆, 「朝鮮後期 校生の 身分에 관한 再檢討」, 『宋俊浩教授停年紀念論叢』, 1987.

崔永浩, 「幼學·學生·校生考—17세기의 身分構造의 變化에 대하여—」, 『歷史學報』 101, 1984.

崔允榛, 「高敞鄕校 東西齋儒生案에 대한 검토」, 『宋俊浩教授停年紀念論叢』, 1987.

韓東一, 「朝鮮時代 鄕校教育制度」, 成均館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1.

2) 全昞穆, 앞의 논문, 1987.

崔允榛, 앞의 논문, 1987.

II. 濟州鄉校의 設置와 移建

조선은 건국초 부터 주자학(朱子學)을 바탕으로 한 유교(儒敎)를 국시로 삼았고, 내륙지방과도 다른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던 제주도를 통치하는데 가장 주력했던 점도 유교였다. 이런 유학을 바탕으로 강력한 교육정책과 동화정책을 펴기 위해 향교 설립이 우선이었다.

지방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이었던 향교는 인재 양성과 유교이념의 보급을 위한 유일한 관학이었고, 공자(孔子)를 봉사(奉仕)하기 위해 마련된 문묘(文廟)가 있었던 곳으로, 건국 초부터 대학(大學)으로 수도에 성균관을 두었고, 소학(小學)으로 중앙에 사학(四學)과 지방에 향교를 두어 자제(子弟)들을 길러냈다.

향교는 고려 인종 5년(1127)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조선 성종대에는 모든 군현에 향교가 설치되었다. 제주지역에 처음 제주향교가 설치된 것은 태조 원년(1392)으로, 지방 향교로는 가장 일찍 설립된 예이다. 김처례(金處禮)의 「제주향교건학비기(濟州鄉校建學碑記)」에 태조대왕 원년 임신년(1392)에 학교가 이루어지고 세종 17년에 다시 지어졌다.³⁾ 라고 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조 3년(1394) 3월 27일(병인)의,

도평의사사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제주에는 일찍이 학교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자제들이 나라에 들어와 벼슬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글자를 알지 못하고 법제(法制)도 알지 못

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8, 濟州牧 學校條, 「在域中 金處禮碑 我太祖元年壬申學校成 世宗十七年乙卯 鄉校再造」.

『增補文獻備考』 卷 209, 學校考 8, 鄉學, 「太祖元年 是年 濟州學校成」.

하여, 각 소(各所)의 천호(千戶)들이 대개가 모두 어리석고 방사(放肆)하여 폐해를 끼치오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교수관(教授官)을 두고 토관(土官)의 자제 10세 이상을 모두 입학시켜, 그 재간을 양성하여 국가의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또 서울에 와서 시위(侍衛)하고 종사(從仕)하는 사람은 천호(千戶)·백호(百戶)가 되게 하여 차부(筭付)를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⁴⁾

고 한 기사에 집착하여, 태조 3년에 제주향교가 설치된 것처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기사의 내용은 교수관의 파견을 요청하고 있을 뿐 학교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향교 없이는 교수관도 필요없기 때문에 향교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교수관의 파견을 요청한 것이다.⁵⁾

태조 원년에 향교가 설치된 후 중종 31년(1536) 명륜당이 중수되었는데 윤구(尹衢)의 「제주향교명륜당중수기(濟州鄉校明倫堂重修記)」에

가정 13년(1534) 가을 심맹용(沈孟容 : 沈連源의 字)이 제주에 자사로 부임하여 가서 삼년째 가을에 사람을 시켜 글을 보내어 구(衢)에게 말하기를, ‘이 고을 학궁은 한결 성균관의 제도[規模]와 같은데 유독 인륜을 밝힌다는 집은 오래 퇴락되어 있어 헐어내고 다시 짓고 동서재로 아울러 고쳐 이어 단청을 올려 새로 하고 정전과 동서무(東西廡)의 벽도 모두

4) 『太祖實錄』 태조 3년 3월 26일(병인), 「都評議使司上言 濟州未嘗置學校 其子弟不入仕於國 故不識字不知法制 各所千戶率皆愚肆作弊 乞自今置教授官 土官子弟十歲以上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試 又以赴京侍衛從仕者 許爲千戶百戶 以給筭付 上從之」.

5) 高昌錫, 「근대 이전의 교육」, 『濟州教育史』, 濟州道教育廳, 1999.

수리하여 금년 가을 석전에 삼읍 수령과 고을 안 노인들을 모아서 낙성을 하였으니 그대는 나를 위해 기문을 써 주시오.’라고 하였다. 나는 군읍에도 모두 공자의 사당이 있어 스승과 학생이 강론하므로 꼭 있어야 될 바인데, 혹시 수리하지 못하면 거기에 훈도(訓導)와 제자를 두어도 명칭은 있으나 실지로는 그 학업을 잃은 일이 많다.⁶⁾

라고 하였다.

향교의 처음 위치는 관덕정 아래 1리쯤 되는 곳에 있었다. 선조 18년(1581) 김태정(金泰廷) 절제사가 부임하여 그 다음 해 성 동남쪽 모퉁이가 락천(嘉樂川) 서쪽으로 옮겼는데, 1652년 제주향교 교수 신찬(申纘)의 「제주신향교이창기(濟州新鄉校移創記)」에

문묘는 예전 제주성안 관덕정 밑 1리쯤에 있었는데 가정 13년 갑오년(1534)에 심연원(沈連源) 상공(相公)이 이 고을에 부임하여 3년이 지난 병신년(1536)에 명륜당을 지은 지 오래 되어 허물어지므로 그 옛 터에다 헐어서 고쳐 짓고 또 손수 그 사실을 기록하여 뒷 사람들의 관망에 대비하였다.

대개 일찍이 주(州)의 선비들 중 연로한 사람들에게 들으니, 신사년(1581)에 절제사 김태정 공이 부임하여 고을 정사로 우선 학교에 유념하여, ‘성묘(聖廟)는 오래도록 우리러보

6) 李元鎮, 『耽羅志』,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1. 「嘉靖十三年秋沈孟容出刺濟州越三年秋使人以書來謂衢曰此州學宮一如成均國學之制獨其所謂明倫堂者年久頽圯今乃撤而改構東西齋舍竝皆葺之詢丹漆煥然一新以至殿廡壁墁亦皆修治今秋釋菜之日率三邑守令及州民之耆老而落之子其爲我記之余惟郡邑皆有孔子廟師生講論皆有所然或不能修而事之雖設訓導弟子名存實亡失其所業者多矣」.

아야 할 곳인데 민가의 사이에 끼여 있고, 또 사장(射場 : 관덕정) 밑에 있으니 숭경(崇敬)하는 뜻을 이룰 곳이 못된다' 하여, 곧 이건설 뜻을 조정해 아뢰고 주성(州城) 동남쪽 모퉁이인 가락천 좌측에 땅을 정하였으니, 대개 그 땅이 조용하고 넓으며 또 성 내의 시끌벅적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취한 것이다.⁷⁾

라고 하였다. 즉 김태정 절제사가 '성묘는 오래도록 우리러보아야 할 곳인데 민가의 사이에 끼여 있고, 사장(射場) 밑에 있으니 숭경하는 뜻이 없다'고 하여 선조 15년(1582)에 가락천 동쪽의 고령전(高齡田, 古齡田)으로 옮겼으나 『학교등록(學校謄錄)』에

이 번에 제주 목사 이인(李瑱)의 장계를 보았더니, '본 목(牧) 향교의 옛 터가 좁고 험하며, 동·서무(東西廡) 간살의 엮이가 [間架]가 더욱 좁아서 위판을 병렬할 수가 없고, 묘정(廟庭)과 성첩(城堞)의 거리가 10보에 불과한 데다 큰 내가가 가까우니, 허물어져 무너질 염려가 있다.' 고 하였는바, '문묘의 터가 좁고 험함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으나 이는 향교의 본래의 터가 아니며 곧 무인년(1578년 : 임오년 1582년의 착오)에 옮겨 지은 곳이니, 옛 터로 도로 복귀하는 것이 합당할

7) 李元鎮, 앞의 책, 1991, 「文廟舊在州之城中觀德亭下一里許地……聖廟萬世瞻仰之所而介處於閭巷之間當之場非所以致崇敬之意也即有移建之志遂以轉聞于朝卜地於州城之東南隅嘉樂泉之左……」.

金錫翼, 『耽羅紀年』,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宣祖)十五年 春 牧使金泰廷 移建鄉校于嘉樂川東古齡田 初鄉校 在觀德亭下一里地 鄉校田 泰廷 以爲聖廟 在鄉校內 聖廟萬世瞻仰之所而介處於閭巷之間當射帳之場 非所以致崇敬之意也 遂啓請移建……」.

것 같습니다.……아뵐대로 허락하였다.⁸⁾

라고 하여 현종 9년(1668)에는 이인(李瑱)목사가 옛 가락천 서쪽으로 이설하게 되었다.⁹⁾ 하지만 경종 4년(1724)에 성 내의 큰 화재로 향교가 소실되자 신유익(愼惟益) 목사에 의해 가락천 동쪽 고령전으로 또 옮겼다. 신유익(愼惟益)의 「제주향교이건기(濟州鄉校移建記)」에

갑진년(1724) 봄에 탐라 성중에 화재가 일어 초가 40여 채가 불타고 백성 남녀 43인이 죽으니 때는 정월 22일이었다.

제주는 바다와 가까워 거친 바람이 많은데 하루 전에(21일) 서풍이 불더니 나무가 뽑히고 돌이 날렸다. 이 때에 거친 불기운이 바람에 날리고 불꽃이 진탕하여 …… 문묘는 성주의 여염집 틈에 끼어 있는데 불빛이 사방에서 비쳐 형세가 심히 위급하였다. 명륜당 서쪽 침관에 불이 불기 시작하여 불꽃이 붙는 곳마다 불뚝이 튀기고 기와가 어지러이 날아 잠깐 사이에 정전(正殿)으로 이어져갔다. …… 재유생들로 하여금 불길을 무릅쓰게 하고 위판을 받들어 피하였는데 삼경이 못되어 정전 및 명륜당 재사(齋舍) 강청(講廳)이 일시에 불에 타고 동서양무는 성전과 거리가 몇 걸음이었지만 거의 남쪽 낮은 곳에 있어 바람길을 향하지 않았으므로 (화재를) 면하였으나 제기(祭器), 책상, 탁자, 관복(冠服), 서적들은 하나도 남은 게 없었다. …… 땅을 살피는 사람 몇 명을 모아 날마다 성안팎을 두루 다녔으나 뜻을 돌만한 곳이 없었는데 비로

8) 『學校瞻錄』 현종 9년(1668) 4월, 5일.

9) 金錫翼, 앞의 책, 1976. 「(顯宗)九年 牧使李瑱 移建鄉校 于嘉樂川西舊址」.

소 다닌 곳 중에서 가락천 위 옛 향교터가 살펴볼만 하였다.¹⁰⁾

라고 하여 화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고령전으로 옮겼다. 그 후 영조 31년(1755) 홍태두(洪泰斗)목사가 지금의 삼성초등학교가 있는 광양(廣壤)으로 옮겼다. 전(前)목사인 김몽규(金夢燿)가 ‘향교는 자리가 낮고 습기가 많다’라고 했기 때문이다.¹¹⁾

순조 27년(1827)에 심영석(沈英錫)목사는 ‘광양의 옛터가 산을 마주보고 바다를 등져 땅의 형세가 좋지 않고 사나운 비바람으로 건물이 번번이 허물어져 수리하는 역사(役事)가 없는 해가 없었다.’고 하여 이설할 것을 허락 받았고 그의 「향교이건상량문(鄉校移建上樑文)」에

광양의 향교를 올려다 보면 그 터 역시 오래 갈 좋은 터가 못된다. 많은 산봉우리가 거둬 겹쳐 앞이 높고 뒤가 낮으며 (바람이 세면) 나무가 뽑히고 기와가 날려 집채가 바람을 끼고 돌아 좌향이 격에 맞지 않아 지리서로 따져 보아도 아름답지 않은데다 해마다 고치게 되니 신위를 자주 옮겨 모시게 됨을 탄식하는 것이 목사가 도입할 때 부터 옮겨 모시자고 요청한 이유였다.¹²⁾

10) 李元鎮, 앞의 책, 1991. 「歲甲辰春耽羅城中火延燒廬舍十餘區人民男女死者四十三人時正月二十一日也州近海多惡風前一日大風從西南來拔走石至是火烈風激……文廟在城之正中閭井雜杏之所火光四合勢甚危急……齋儒生冒燄奉位板以避之未及三更正殿及明倫堂暨齋舍講廳一時燒燼東西兩廡距 聖殿數武而其近南稍低不爲風頭所向故免焉至於祭器床卓冠服書籍無一遺者……請人以余言爲然遂招聚相地者數輩日日同出遍求於域地內外無一處可意者始出輿地而巧之得嘉樂川上舊基焉」.

11) 金錫翼, 앞의 책, 1976. 「(英祖)三十一年……洪泰斗以文廟卑濕 移建鄉校于廣壤 踵前牧使金夢燿議也」.

12) 鄉校誌編纂委員會, 『濟州鄉校誌』, 2000, 「……瞻彼廣壤之廟基亦非永久之吉之峰稠嶂疊局

라고 하였다. 후임인 이행교(李行教) 목사가 지금의 용담동으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의 「제주향교이건기(濟州鄉校移建記)」에

정해년(1827) 8월에 내가 탐라 임소(任所)에 부임하였더니, 전 목사 심영석(沈英錫) 공이 향교를 이건하는 일로 이미 장계를 올려 허락을 받았으나 뜻하지 않은 일로 체임되었었다. 내가 전 목사에게 이건의 사유를 물으니, ‘광양 옛 터는 산을 향하고 바다를 등져서 지세가 전도되었고, 사나운 비, 바람으로 건물이 번번이 허물어져 수리하는 역사(役事)가 없는 해가 없었다. 섬 안의 청금생 1100여명이 부임 초에 일제히 하소연하였는데, 대개 그들의 뜻은 향교를 이건한 지 이미 70여년이나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나 또한 지난 일을 회상하여 감동하고 앞 사람이 하던 일을 계승할 뜻이 있어, 땅을 측량하고 터를 잡는데 많은 날을 허비하여 주성(州城) 서쪽에 좋은 땅을 얻었다. 한라산의 한 가닥이 북으로 달리다 동으로 감아도니, 산세는 멀리 돌리어져 별이 벌여 있고, 바둑돌이 놓여 있는 것처럼 황홀하고 바다 빛은 깊이 잠기어 큰 파도 성난 물결을 보지 못한다. 문명(文明)이 탁 터져 환하고 끌어안아 도량이 크고 온후하니, 성묘의 신주를 모실 곳으로는 더없이 합당하다. 영을 내려 많은 장인들을 감독하여 며칠 안으로 이룩할 것을 기약하였다.’고 하였다.¹³⁾

勢前高而後低樹拔瓦飛棟宇旁風而上雨坐向失格可見地理之不佳修改連年歎 神位之頻奉所以士林移奉之請乃在牧伯莅位之……」.

13) 鄉校誌編纂委員會, 앞의 책, 2000, 「歲在丁亥仲秋余到耽羅任所前牧使沈公英錫以鄉校移建之事已狀聞蒙允匪意徑遞矣余聞移建之由於舊使則日廣壤舊基面山背海地勢顛倒籜風□雨屋宇輒頽修改之役無歲無之島中責衿累千百人莅任之初蓋此意已七十餘年之久矣非但逝者齋鬱以我入代祖議政公莅此時創建明倫堂大有功於校宮責之以肯堂肯構之我亦有感舊繼迷之

라고 하여 향교를 옮기게 된 이유와 현재의 용담동에 자리잡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치된 향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선현(先賢)들을 향사하는 것이다. 공자(孔子)의 위패를 중심으로 안자(顏子), 증자(曾子), 자사자(子思子), 맹자(孟子) 등의 4성(聖), 공문 10철(孔門 10哲), 송조 6현(宋朝 6賢)을 모시고 동·서무(東·西廡)에 공자의 제자를 비롯하여 역대의 유현(儒賢)등 110위를 종사(從祀)하였다. 하지만 모든 향교가 이렇게 봉안한 것은 아니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대설위(大設位)·중설위(中設位)·소설위(小設位)¹⁴⁾로 나누어 봉안하여 신위의 수를 차감하였다.

조선시대 제주향교의 경우, 봉안위(奉安位) 수가 성균관과 같고, 공자를 정위(正位)로 하여 4성과 공문 10철, 송조 6현을 대성전의 좌우에 배향하고 동·서무에는 중국의 명현 47위와 우리 나라의 명현 9위를 종사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제주 삼읍 향교 모두 공자를 정위(正位)로 4성을 배향하고 송조 4현과 신라, 고려, 조선조의 명현 18위를 문묘에 종사하고 있다.

잡은 이설을 거치면서 제주 향교에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계성사(啓聖祠) 좌우협문(左右夾門) 등이 있다. 계성사는 5현의 아버지 위패를 봉안하여 제사 지내는 사당으로 제주향교의 계성사는 철종 6년(1855)에 건립되었다. 처음에 김몽신(金夢臣), 김영업(金英業), 신상흠(愼尙欽) 등이 몇 차례 상소하여 계성사의 건립을 요청하였는데 1854년

意多費經 營得一好基址於州城之西漢拏一枝北走東回山勢遠拱倪若星羅棋布海絕深藏不見鯨濤鰐浪文明開朗控抱蘊藉政合聖廟妥靈之所令其董飭群工以期不日之成」.

金錫翼, 앞의 책, 1976. 「(純祖)二十七年 冬 牧使李行教 移鄉校西域外 初 牧使沈英錫以文廟基址 四面受風 啓請移建 未作而罷去 李行教踵而成之 官隸高相信 納付基地」.

14) 대설위(大設位)는 5성(聖), 10철(哲), 70자(子) 및 한, 당, 송, 원(漢唐宋元)의 제유(諸儒)와 동국 18현을 성균관의 문묘와 같이 봉안하였고, 중설위(中設位)는 공자 주향(主享)에 4성 배향, 10철과 송조 6현을 전내 종향, 동·서무에 동국 18현을 종향(從享)하였으며, 소설위(小設位)는 공자 주향에 4성 배향, 송조 4현(주돈이, 정호, 정이, 주희)를 전내에 종향, 그리고 동국 18현을 동·서무에 종향하는 것이다.

가을에 유생 고사징(高泗澄)이 요청하자 당시 영의정 김좌근(金左根)이 아뢰어 윤희를 받고 향교에 세웠다.

지금까지 살펴본 향교의 설치와 이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빈번한 이설과 중수, 그리고 그 시기이다. 향교와 관련된 모든 일들, 예컨대 이건이나 중건, 중수, 위패의 봉안과 같은 일들은 반드시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서 주관하였다.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한 일들이었다.¹⁵⁾ 또 시기에 있어서도 명종, 선조 이후로 사학인 서원이 전국적으로 융성하던 때였다. 향교가 쇠퇴하기 시작하여 법제상으로도 교수, 훈도가 혁파되고 교육기관으로는 그 기능을 상실한 때에 제주도의 향교가 빈번한 이설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Ⅲ. 鄕校의 職制와 校生

조선초 나라에서는 유교이념의 보급과 지방민이 교육과 교화를 위해 군현마다 향교를 세우고 교관을 파견하였다.

이 장에서는 교관 등 향교의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들과 교생들, 그리고 조선후기 고강(考講)실시로 인한 청금록의 작성 등을 살펴보겠다. 특히 제주도는 중앙과 떨어져 있어 다른 지역보다 교관 파견에 있어서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교수·훈도 파견과 훈장을 설치하여 교육했던 사실, 교생과 청금유생, 고강실시에 대한 내용을 향교소장 고문서와 청금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5) 梁鎭健, 「朝鮮朝 濟州島 教育施設」, 『耽羅文化』 제12호, 1992.

1. 職制 및 構成

조선시대 향교의 교육과 운영을 담당한 사람은 교수(教授)와 훈도(訓導) 등 향교 생도를 가르치는 교관(敎官)이었다. 향교의 교관은 종 6품인 교수와 종 9품인 훈도, 생원·진사 중에서 교도(敎導)가 있었으며, 그 지방에서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학장에 임명하였다. 『경국대전』에는 부·목·대도호부에는 종 6품인 교수, 각 군과 현에는 종 9품의 훈도 등 모두 329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⁶⁾ 그리고 교관이 향교의 교육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으나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생 중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향교운영을 돕도록 하였다.

교수는 문과급제자를 임명하였는데, 실제로는 문과급제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우도 좋지 않아 교수가 되는 것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항상 법정 교관수는 모자라는 형편이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향교를 구성했던 교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제주도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수관의 파견으로 향교 교육이 시작되었다. 태조 3년(1394)에 교수관의 파견으로 향교의 교육활동이 시작되면서 판관이 교수관을 겸임하게 되고, 겸교도(兼敎導)와 교도도 파견되었다. 그리고 훈장을 두어 유생을 교육한 기록도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다음의 사료를 통해 살펴보겠다.

먼저 교수관의 파견 내용을 살펴보면, 태조 3년(1394) 3월 26일(병인)에

도평의사사사에서 아뢰기를, ‘(중략) 바라건대, 지금부터 교수관을 두어 토관의 자제 중 10세 이상은 모두 입학시켜, 그 재질을 양성하고 국시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또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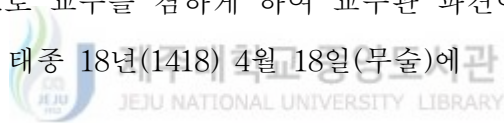
16) 『經國大典』 卷1, 吏典 外官職條.

에 오는 시위 종사자는 친호·백호를 삼도록 하고 차부를 주
십시오.’ 하니, 임금이 이에 따랐다.¹⁷⁾

고 하여 교수관을 두어 토관의 자제를 교육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후에 판관이 교수관을 겸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태조 7년(1398) 윤5월 29일(갑진)에

제주판관 김과(金科)가 진정서를 올려서 말하기를, ‘(중략)
5월 21일에 신을 발탁하여 제주판관겸 교수의 직책을 제수하
셨으니 더욱 전하의 은덕을 입게 되어 감축하고 경행하옵니
다.’¹⁸⁾

라고 하여 판관으로 교수를 겸하게 하여 교수관 파견이 쉽지 않았음을 말
해주고 있다. 또 태종 18년(1418) 4월 18일(무술)에



다시 제주의 유학교수관을 임명하였다. 예조에서 제주 감
목관의 정문에 의거하여 말하기를, ‘주와 임내에 유생이 200
여 인인데 사송과 잡무가 번극하여 비록 판관이 교수관을 겸
임하였다 할지라도 실제로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전례에 의하여 따로 교수관을 임명하십시오. 또한 정의·대
정의 학교도 아울러 고찰하도록 하여 문풍을 떨치게 하십시
오.’ 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⁹⁾

17) 『太祖實錄』 태조 3년 3월 26일(병인), 「都評議使司上言……乞自今置教授官土官子弟十歲以上皆令入學養成其材許赴國試又以赴京侍衛從仕者許爲千戶百戶以給筭付 上從之」.

18) 『太祖實錄』 태조 7년 윤5월 29일(갑진), 「濟州判官金科上陳情箋曰……五月二十有一日擢臣除濟州判官兼教授之職益荷 上德感祝慶幸」.

19) 『太宗實錄』 태종 18년 4월 18일(무술), 「復差濟州儒學教授官禮曹據濟州牧官呈上言州及

고 하여 관관이 교수관을 겸하면서 많은 폐단이 야기되고 있었다. 즉, 관관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잡무가 많아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관의 직무수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관관이 교수관을 겸하는 것을 없애고 따로 유학교수관을 두고 있다. 유학교수관은 유생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던 벼슬로, 한성(漢城)의 오부와 각 도의 주·부·군·현에 이를 두었는데, 세조 12년(1466)에 교수로 고쳐진다.²⁰⁾

이러한 교수관과 함께 교도를 요청한 사실을 다음 사료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세종 2년(1420) 11월 15일에

제주 경재소에서 아뢰기를, ‘대정·정의 두 고을에 비로소 향교를 두게 되어서 두 고을 생도가 각각 50여 인이니, 청컨대 그 고을 사람으로서 경서(經書)에 밝고 수양(修養)된 자를 뽑아서 교도(敎導)를 삼게 해 주소서.’하였다.²¹⁾

라고 하였고 세종 3년(1421) 정월 13일(병자)에

대정(大靜) 정의(旌義)에 겸교도(兼敎導)를 새로이 두었다.²²⁾

고 하여 겸교도가 선발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지만, 세종 8년(1426) 12월 6일(을축)에도 대정·정의에 교도를 새로이 두었다는 내용으로 교도의 선발도 쉽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任內儒生二百餘人詞訟雜務煩劇雖以判官兼敎授官實難敎訓請依前例別差敎授官旌義大靜學校竝令考察以振文風」.

20) 高昌錫, 앞의 논문, 1999, p.111.

21) 『世宗實錄』 세종 2년 11월 15일(기묘), 「濟州京在所上言大靜旌義二縣始置鄉校兩縣生徒各五十餘人請選州人經明行修者爲敎導」.

22) 『世宗實錄』 세종 3년 정월 13일(병자), 「新置大靜旌義兼敎導……」.

한편 삼읍 향교와 각면에는 훈장을 두어 유생들을 교육하였는데, 제주향교에 소장된 「각면훈장설치절목(各面訓長設置節目)」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각면훈장설치절목」은 순조 30년(1830) 10월 이에연(李禮延) 목사가 발급한 것으로, 조선 후기의 기록이다.

서두와 8개항의 절목으로 되어 있는데, 서두에,

국가에서 백성을 교화시켜 좋은 풍속을 이루는 근본은 학문을 일으키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학문을 일으키는 근본도 또한 어린이를 가르쳐 인도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어려서 배우지 아니하고 자라서 책임을 완성한 자는 아직 없었다.

(중략) 당초 각 면(面)에 훈장을 설치한 것은 고(故) 홍상서(洪尙書 : 洪重徵목사)가 이 고을을 다스릴 때에 있었던 일이나, 중간에 폐지되어 행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 가르침을 정하여 학문을 일으키는 방도가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옛날의 학규(學規)를 본 모습과 같이 손질하고 향교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학식이 있어서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선발하여 훈장을 정하고, 생도를 가르치고 이끌어서 기어이 실효가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講)을 받는 여러 절목은 아래에 조목조목 열거하니, 심상히 여기지 말고, 명심하여 영원히 준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백성들을 교화시킴에 학문이 가장 근본임을 말하면서, 훈장을 정하매, 향교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학문을 일으킬 수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을 선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강(講)을 받는 여러 절목을 열거하고 영원히 준행토록 하고 있다. 절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유(韓愈 : 당나라 사람)의 「사설(師說)」에, ‘도(道)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라 하였다. 도훈장 외에 각 면 훈장은 청금(靑衿)과 향소(鄕所)를 막론하고 문학(소학교육)이 있어서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선발하여 정할 것.

1. 강을 받는 제생(학생)은 향교, 서원, 삼성사를 막론하고 15세이상 30세 이하로 한정하되 백성들 중에 준수한 자는 비록 유안(儒案)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제자직(弟子職 : 제자의 학칙을 서술함)을 닦기를 원하는 자는 또한 입장을 허락할 것.

1. 시골의 가난한 선비로 손수 농사를 짓는 자는 비록 사계절을 기다리더라도 강받기를 바라면 11월에서 3월 말일까지 초하루와 보름날마다 강을 받은 뒤 매달 끝날 때에 훈장이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향교에서는 (관아에) 전보(轉報)할 것.

1. 이 명령을 내린 뒤에 만일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여 강을 받지 않거나,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면 해당 면의 훈장 향교에서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조사하고 (관아에) 품보(稟報)하여 중한 죄를 처벌할 것.

1. 전에 집강을 지냈거나 자급(資級)이 있는 자는 전례에 따라 강을 면제할 것

1. 생도 중에 만일 명령을 내려 계칙한 것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완강히 강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한번 강을 받지 아니하면 회초리를 치고, 두 번 받지 아니하면 서책에 기록하며, 세 번 받지 아니하면 명부에서 삭제할 것.

1. 지금부터 시작하여 매년 겨울이 되면 사무를 맡아 보는 사람들은 절목에 따라 관청에 보고하고, 각 면에 명령을 내

려서 강을 받는 일을 실시케 하되, 만일 중지하여 거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향교의 사무를 맡아보는 자들도 또한 중죄로 처벌할 것.

1. 이상은 내가 재임할 때만 명예를 구하고자 하는 문구(文具)가 아니라, 실로 임금의 명령을 이어받아 수령이 먼 지방을 진정시켜 편안케 하는 정성된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다. 그러므로 향교의 사무를 맡아 보는 사람들과 각 면의 훈장들은 영원히 정성껏 부지런히 힘써서 준수·시행할 것.

즉, 강을 받는 학생은 향교, 서원, 삼성사를 막론하고 15세이상 30세 이하로 정하고 유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강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농사 짓는 선비들은 농번기를 피해서 11월에서 3월까지 초하루와 보름에 강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훈장은 관아에 전보(轉報) 한다. 전에 집강을 지냈거나 자급(資級)이 있는 자는 강을 면제해 주었고 명령을 내려 계척한 것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세 번 강을 받지 않으면 명부에서 삭제해 버렸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매년 겨울이 되면 향교 사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관청에 보고하고, 각 면에 명령을 내려 강을 받는 일을 실시케 하되,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조선 후기 향교교육이 쇠퇴하고 교수·훈도의 지위도 낮아져 17세기 이후에는 교관을 과견하지 않았으며²³⁾ 그리고 1746년 간행된 『속대전(續大典)』에는 교수·훈도가 감원되었고, 1785년에 편찬된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교수·훈도가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다.²⁴⁾ 관학인 향교가 수령의 관찰 하에 있었지만, 실제 이런 상황 하에서 향교 운영은 유생 대표들이 맡고 있었다. 이들을 총칭하여 교임(校任)이라 한다.

23) 李成茂, 앞의 논문, 1969, pp.244~245.

24) 『大典通編』 卷1, 吏典 外官職條.

다음의 사료에서 교임의 구성을 알 수 있다. 『목민심서(牧民心書)』에

향교에서 일을 맡은 자는 교장(校長) 1인(남부지방에서는 都
有司), 장의(掌議) 1인, 색장(色掌), 2인이다.²⁵⁾

교임의 구성은 교장(도유사), 장의, 색장의 이름을 들고 있고, 지역마다
모두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의 읍지 기사를 통해 살펴
보겠다.²⁶⁾

- 가-① 齋任 校長一人, 掌議二人, 典穀二人(『湖南邑誌』 淳昌郡邑誌 學校條)
② 儒品 鄉校都有司一人, 齋任二人, 校生五十人(『嶺南邑誌』 陝川郡邑誌
官職條)
③ 齋長一人, 掌議二人, 色掌二人, 有司一人(『務安鄉校誌』 卷1, 任員)
④ 齋首一員, 掌議二員, 色掌二員(『湖南邑誌』 長城府邑誌 事例)

- 나-① 都有司一員, 掌議一員, 有司一員(『湖南邑誌』 舒川郡邑誌 邑事例)
② 都有司一員自代, 掌議二員, 齋有司一員(『嶺南邑誌』 義城縣邑誌 事例)
③ 鄉校 齋首一員, 掌議二員, 齋任二員(『湖南邑誌』 谷城邑誌 邑事例)

위의 가①②③④에서 보면 교임의 우두머리를 교장(校長), 도유사(都有
司), 재장(齋長), 재수(齋首) 등으로 부르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유사로, 여러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도유사 다음으로 장의(掌議)가 있다. 장의의 명칭은 도유사와는
달리 모든 향교에서 장의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다.

25) 『목민심서』 卷7, 禮典 興學條.

26) 尹熙勉, 앞의 책, 1990, pp.153~155.

말단 교임으로 색장(色掌)이 있다. 나①②③에서 보면 색장은 유사(有司), 재유사(齋有司), 재임(齋任)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대부분이 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향교의 교임은 우두머리격인 도유사(교장, 재장, 재수 등)1명, 차임인 장의 2명, 각종 사무를 담당했던 색장(유사, 재유사, 재임 등)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삼읍의 경우, 각 읍지의 학교조(學校條)에 나타난 교임을 살펴보면,

다 - 訓長一人, 掌議二人, 有司四人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牧)
 訓長一人, 掌議二人, 有司二人 (『濟州大靜旌義邑誌』, 大靜縣)
 訓長一人, 掌議二人, 有司四人 (『濟州大靜旌義邑誌』, 旌義縣)

라 - 訓長一人, 掌議二人, 有司四人 (『耽羅誌草本』, 濟州牧)
 訓長一人, 掌議二人 (『耽羅誌草本』, 大靜縣)
 訓長一人, 齋長一人, 掌議二人, 有司四人 (『耽羅誌草本』, 旌義縣)

제주목은 교수 1명, 훈도 1명, 장의 2명, 유사 4명이 있고, 양현에는 훈도가 각 1명, 장의 2명, 유사는 2명에서 4명이었다.²⁷⁾ 그리고 훈장과 재장이 각각 1명씩인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의 대표인 교임은 장의, 유사이고 훈장은 학생대표가 아닌 조선 초기의 교수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

또 교임을 선출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831년(신묘년) 이예연(李禮延)목사가 절목을 발급했는데, 그 「절목」에

학궁(學宮)에 장색(掌色 : 掌議, 色掌)이 있음은 옛날의 기강을 유지하고 공의(公議)를 주장하며 선비들의 표준이 되어

27) 『經國大典』, 吏典, 外官職條.

야 한다. 반드시 청렴함에 힘쓰고 예의와 절조를 중히 여겨 나아가기는 어렵게 하고 물러서기는 쉽게 한 뒤에야 가히 선비가 의리에 처하는 도리라 이를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잘못된 습관이 풍속이 되어 옛 법규는 버려두고 쓰지 않으며 나아가기만을 일삼으므로 체모가 많이 손상되니 이런 선비의 법규에 어찌 한탄하지 않으리요. 이에 많은 선비들이 진정(陳情)함에 따라 절목을 만들어 게관하니 영원토록 준행할 것.

이라고 하면서 학궁(學宮)에 장색이 선비들의 모범이 되고, 예의와 절조를 중히 여기는 풍속을 손상시키는 선비들이 있어서 절목을 만들어 경계하도록 하고 있다. 절목은 5개항으로, 다음과 같다.

1. 교궁의 장색은 학교 규칙에 따라 1년에 한하여 바꾸며 법규를 무시하고 장색이 되면 재중(齋中 : 학생모임)에서 의논할 뿐만 아니라 관청에 품의할 것.

1. 교임을 뽑을 때에 다투는 일이 습관이 되어 □□를 천거하니 후에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어 괴이하게 어겨지고 이지러지고 잃음이 있을 것이니, □□를 천용할 것.

1. 훈장의 임사는 옛날의 교수이니 교수를 바꾸던 삼년으로 임기를 정한다.

1. 훈장은 유림의 영수이니, 지방에서 명망이 높고 문지(門地)가 있고 문식 있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를 택하되, 만약 법도를 어겨 들어온 무리가 차정(差定)받기를 도모하면 북을 쳐서 성토하고 영원토록 하지 못하도록 할 것.

1. 향교내의 크고 작은 임원은 영문(營門 : 牧營) 본부(本府 : 判官府)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분부(分付 : 문서 없이 말

로 하는 명령)로 바로 뽑는 폐단이 있으면 시행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류(士類)와 동렬(同列)로 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공의 장색은 규칙에 따라 1년에 1번 바꾸고, 만약 법규를 무시하여 장색이 된 이는 재중(齋中 : 학생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관청에 품의하여 물리친다. 훈장은 3년을 임기로 하고, 명망 있고 문식 있는 사람들이 훈장을 추천하되, 법도를 어기는 무리가 차정(差定)받기를 원하면 복을 쳐서 성토하고 영원히 하지 못하도록 한다.

2. 校生과 考講

조선시대 교생은 공신(功臣)의 자제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독서를 원하면 입학이 허락되었고 원칙적으로 16세 이상의 지방 자제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분에 따라 양반은 액내(額內)교생이 되었고, 평민·서얼은 액외(額外)교생이 되어 서로 구별되어 있었다. 인조대에 교생 고강(考講)이 강화되면서 양반들은 액내교생으로 입학하는 것을 회피하였고, 고강이 면제되는 성군관, 사학을 모방하여 동재유생(東齋儒生 : 靑衿儒生)이라고 하면서 청금록(靑衿錄)을 작성하여 교생과 구별하였다. 이에 평민·서얼들은 양반을 대신해서 액내교생으로 입학하고 동재유생과 구별하여 서재유생(西齋儒生)이라 호칭하였다.

교생의 정액은 군현의 등급에 따라 『경국대전』에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은 90명, 도호부(都護府)는 70명, 군(郡)은 50명, 현(縣)은 30으로 규정되어 있고,²⁸⁾ 이것은 조선후기 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래서

28) 『經國大典』 卷3, 禮典 生徒條.

제주목은 90인, 정의·대정은 30인이어야 하지만 수의 제한이 엄격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의 교생수는 시기별로 효종 때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와 숙종 때 이형상(李衡祥) 남환박물지(南宦博物誌) 그리고 정조 때 읍지류를 비교했다.

효종시의 생도 수는 제주향교가 정원을 초과하였고²⁹⁾, 정의현은 66인으로 정원의 두배를 넘었고³⁰⁾, 대정현은 15인으로 반밖에 안되었다.³¹⁾

숙종 30년(1704) 당시, 제주향교 교생수는 350여명, 유생수는 277명, 정의향교는 교생수 180여명, 유생수 161명, 대정향교 교생수 60여명, 유생수 42명이었다.³²⁾

또한 정조 때(1793) 읍지류에는 제주향교에는 액내교생이 150명, 액외교생이 33명, 청금유생이 163명이었고³³⁾, 정의향교는 액내교생이 30명, 액외교생이 20명, 별치거접생이 15, 청금유생이 240명이었으며³⁴⁾ 대정향교는 액내교생이 30명, 액외교생이 70명, 별치거접생이 5명 그리고 청금유생이 110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⁵⁾

조선 후기 청금록이 작성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군역 충당에 관한 내용은 이미 『조선왕조실록』 선조 33년(1600) 12월 3일에

29) 李元鎭, 『耽羅志』, 濟州牧 學校條, 「校生之數過於州額而志學者少」.

30) 李元鎭, 『耽羅志』, 旌義縣 學校條, 「鄉校在縣南城內校生時數六十六人」.

31) 李元鎭, 『耽羅志』, 大靜縣 學校條, 「鄉校舊在北城內中移東門外環移西城內今移城南單山下校生時數十五人」.

32) 李衡祥, 『南宦博物誌』, 誌文條.

33) 『濟州大靜旌義邑誌』, 學校條, 「青衿儒生一百六十三人額內儒生一百五十人額外儒生三十人」.

34) 『濟州大靜旌義邑誌』, 學校條, 「青衿儒生二百四十人額內儒生三十人額外儒生二十人別置居接生十五人」.

35) 『濟州大靜旌義邑誌』, 學校條, 「青衿儒生一百十人額內儒生三十人額外儒生七十人別置居接生五人」.

본 도(島)는 경인년(1590)에 전염병이 있는 뒤로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의 태반이 사망하여 궐호(闕戶)가 3분의 2나 됩니다. 그러나 달리 충정(充定)할 만한 장정이 없으니, 관방(關防)의 중지(重地)에 수어(戍御)할 방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주(州) 교생의 인원수가 지나치게 많아 교적(校籍)에 이름만 실어 놓고 편안히 놀고 지내니, 무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생들이 전에 읽은 글을 고강하여 순(純)이나 조(粗) 이상은 교생의 원액(元額)에 충원하고, 그 밖에 불통(不通)한 본 주의 106명과 정의현의 2명은 법에 따라 강등시켜 군역에 충당하였습니다.³⁶⁾

라고 하여 성윤문(成允文)목사는 전염병과 흉년으로 민호가 줄어 군정이 부족하므로 고강에 불통한 교생을 군역에 충당할 것을 주청하고 고강에 불통한 제주 교생 106명과 정의교생 2명을 군역에 충당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권학(勸學)과 권과(勸課)의 목적으로 선초부터 교생고강을 하였지만 향교교육의 쇠퇴와 양반들의 향교 외면으로 고강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었다. 교적(校籍)에 이름만 올려 교생수만 늘어나고 실제 학문에 전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교생 고강에서 불통한 자가 106명이라는 숫자는 군역을 모면하기 위해 향교에 형식적으로 입학했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특히 선조 연간에는 방어상 수령이 무관(武官)으로 임명되고 있어서 대체로 유생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아 전시(戰時)나 전후(戰後)의 군역에 종사하는 이외에도 때로는 천역(賤役)에 동원되었고 훈도 결원시에는 향교유생들이 훈도가 빨리 부임하기를 바랐던 것은 천역을 면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었다.

제주도의 경우도 액내·액외의 구별을 하여 동재유생과 서재유생으로 불

36) 『宣祖實錄』 선조 33년 12월 3일(임신).

렸고 영조 14년(1738) 홍중징(洪重徵)목사의 「청금안서(靑衿案序)」에

학교는 풍속을 교화하는 원천이며 풍속을 교화하는 것 중에는 명분이 우선이다. 오직 우리 열성조께서는 상, 서(庠, 序 : 둘다 중국 고대의 학교)의 교육에 더욱 경의 표하였다. 위로는 국도(國都)로부터 아래로는 먼 지방의 자그마한 마을에 이르기까지 제도와 규모가 모두 한 가지 법을 따랐다. 이미 명륜당을 세웠고 또 동·서에 양재(兩齋)를 나누어 설치하여 선비를 양성하는 장소를 삼았다. 세가문족(世家門族) 가운데에서 학문에 뜻을 둔 자는 동재(東齋)에 살면서 글을 읽고 학문을 쌓는 데 매진하였고, 어염집의 자제 가운데에서 학덕 있는 사람과 교유를 원하는 자는 서재(西齋)에 살면서 물 뿌리고 쓰는 예절을 갖추었다. 그 순서와 절차의 세목이 질서 정연하여 어지럽지 아니하였다. 명분 사이에서 삼가는 그 뜻이 지극하였기 때문이다.³⁷⁾

라고 하였다. 이처럼 신분을 구별하여 세가문족 가운데 학문에 뜻을 둔 자는 동재에 살면서 학문에 매진하고 어염집의 자제는 서재에 살면서 물뿌리는 예절을 배우는 등의 학업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16세기 이후에 양반 자제들이 액내생이 되는 것을 꺼리므로 평민·서얼들이 액내유생을 차지하여 군역을 면하거나 과거시험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특히 인조조에 교생고강에 대한 원칙이 새롭게 마련되었는데 낙강한 교생을 신분에 구애없이 군역에 충당하려고 하자 양반들이 고강을 모면하기 위해 청금록을 별도 작성하여 청금유생이라 이룬 것이다.

제주도도 영조 14년(1738) 홍중징 목사가 선비를 대접하고 지위와 문벌

37) 高昌錫, 앞의 책, 1999, p.117.

이 있는 10개의 가문을 선택하여 청금안을 세워 토목 역사를 면해준 것처럼³⁸⁾ 많은 사람들이 군역을 모면할 대책을 모색하여 양반임을 증명할 수 있는 향안에 입록하고자 청금록의 입안에 신경썼다.

제주향교에 소장된 청금록(靑衿錄)을 살펴보면, 모두 8책이다.³⁹⁾ 제주향교에 소장된 청금록은 정의향교 청금록과는 달리 간지(干支)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 작성연대는 청금록에 기재된 과거급제자명부[縉紳錄]를 바탕으로 알 수 있었다.⁴⁰⁾ 진신록(縉紳錄)이 첨부되어 있는 것은 3책이고, 나머지 5책 중 4책은 그 명단에서 특정 인물을 선정하여 생몰연대를 조사하고, 작성연대를 추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1책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표 1> 제주향교 청금록 작성시기별 입록자

연번	작성연대	인원수	진신선생안 (과거급제연도)	전안으로 부터 간격
1	乙丑(영조 21, 1745)	96명	鄭希寬(1680), 鄭敞選(1716) 高處亮(1716), 邊是重(1727) 李壽根(1738), 梁德廈(1738)	
2	辛巳(영조 37, 1761)	195명	邊是重(1727), 梁德廈(1738)	16년
3	丙戌(영조 42, 1766)	211명	邊是重(1727), 梁德廈(1738) 金衡重(1763)	5년
4	壬寅(정조 6, 1782)	79명		16년
5	己未(정조 23, 1799)	119명		17년
6	辛卯(순조 31, 1831)	298명		32년
7	庚辰(고종 17, 1880)	134명		49년

* 위 표의 진신선생안은 제주향교 청금록에 수록된 것이다.

38) 金錫翼, 앞의 책, 1976, 「(英祖)十四年…洪重徵 特士以禮舉 靑衿生立案 勿責土木之役」.

39) 이 외에 제주향교에 소장된 고문서는 유안(儒案) 1책, 유생안(儒生案) 1책, 원록(院錄) 3책, 절목(節目) 8책, 장의안(掌議案) 1책, 면심사정도안(免審査正都案) 1책, 향교대궐안(鄕校待闕案) 7책, 면강안(免講案) 1책, 향교품관안(鄕校品官案) 1책, 향품자지안(鄕品子枝案) 1책, 향교급각단유직생안(鄕校及各壇留直生案) 1책, 향안(鄕案) 11책이다.

40) 濟州儒脈六百年史編纂委員會, 濟州儒脈六百年史, 1997, pp.454~471.

제주향교의 청금록은 다른 지역처럼 액내외·동몽(童蒙)·업유(業儒)·노유(老儒) 등의 구분이 없이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기타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청금유생의 인원수만 파악할 수 있었고 입록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한번 입록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작성될 때 거듭 입록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 외 유안(儒案)과 유생록(儒生錄)은 1900년대 것으로, 유안은 150명이 기록되어 있고 유생록에는 각 면별로 구분되어 있다.

<표2> 각면별 유생수

각 면	유생수	각 면	유생수
별방면	100명	귀일면	273명
평대면	62명	애월면	110명
동중면	207명	명월면	113명
서중면	109명		

제주 향교의 청금록, 유안, 유생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고, 다른 지역처럼 청금록의 입안에 신경썼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금록의 작성에 신경썼던 반면 고강실적이 부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강을 회피하거나 고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자주 중단되는 등⁴¹⁾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낙강자(落講者)들의 소요도 고강을 형식적으로 그치게 하는 데 큰 이유가 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21년(1745) 5월 12일에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재로가

41) 尹熙勉, 앞의 책, 1990, p.143~151.

말하기를 ‘제주 목사 윤식(尹植)이 장계하여 논하기를, 본도의 유품(儒品), 가솔(假率) 등의 명색으로 고강과 시사(試射)에서 떨어진 자가 있어 기병(騎兵), 보병(步兵)으로 강등시켜 군역에 충정하였더니, 이 무리들이 노여워하여 깊은 밤에 객사의 전패(殿牌)를 봉안한 곳에 모여 곡(哭)을 하였다고 하였으니, 거조가 매우 패악하여 엄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여서 곡한 수범(首犯) 세 사람을 두 차례 형추하여 다른 도로 정배(定配)하고, 유품, 가솔로 사강(射講)에서 떨어진 자는 모조리 결원(缺員)에 보충하여야 마땅합니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⁴²⁾

이처럼 낙강자들이 군역에 충당됨에 불만을 갖고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 생기면서 조정에서는 군역의 폐단보다는 이런 낙강자들의 불만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임진란 이후 납속면강(納粟免講) 제도가 시행되면서 향교 교육 분위기는 더욱 흐려졌다. 납속면강은 곡식을 바쳐 고강을 면하는 것으로, 재정확보에 이용되었고, 조선초 교생들에게 면학을 권하기 위해 시사(試講)해 왔던 고강이 후기로 넘어가면서는 군역변통의 한 방법으로 이용된 것이다. 고강의 대상도 인조대에는 액내교생까지였지만 숙종 45년(1719)에 서원과 사원의 원생도 포함되어 군역 충당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 면강첩(免講帖)이었다. 이것 또한 재정확보를 위한 것으로, 고강대상자인 액내의 교생에게 고강을 면제받도록 발급한 첩문이다. 향교보호에 큰 공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전란(戰亂) 중에 위패를 보호했다는 공으로 면강첩을 만들어 주는 경우를 제외하면,

42) 『英祖實錄』 영조 21년 5월 12일(계미).

대부분 공명첩(空名帖)과 같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발급해 주었다. 국가 재정의 타개책으로 뿐만 아니라 각 군현의 재정책으로도 활용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전답문기(田畝文記) 가운데에도 면강을 목적으로 받을 파는 경우도 있었고, 순조 2년(1802)에 작성된 다음 문서에서도 면강의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고을의 군기와 각종 기계가 파손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전혀 쓸만한 것이 없다. (중략) 이미 파손된 것을 알았으니, 긴요한 것과 긴요하지 않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개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이는 곧 물력이 미치지 못하여 아직 논할 수 없거니와 궁시 등의 물건에 이르러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 어느 정도 알맞게 개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뒤에 뒷날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을의 재력이 예로부터 쇠잔하여 여기에 들어갈 물자는 본디 나올 곳이 없다. 그러므로 삼청(三廳)에 면강을 자원하는 자는 특별히 영을 내려 시행하도록 허락하되, 각각 8필의 무명을 받아서 물력을 만들어 무역하는 경비로 삼도록 하였으니, 무명을 바친 가솔 강흥우를 종신 면강케 하고 뒷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에 입안한다.⁴³⁾

고 하여 면강 대상자 강흥우(姜興佑)가 무명 8필을 바치고 종신 면강자가

43) 高昌錫, 앞의 책, 1999, p.119.

이미 1671년(현종 12) 8월 4일에 교생 김정오(金鼎五)가 전 첨사 김번(金璠)에게 받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명문(明文)에 ‘동인(김번)에게 조 [粟] 9섬을 아들의 면강을 위해 빌려 관청에 납부하였으나 갚아 줄 길이 없어 처남 부상필(夫尙弼)에게 산 석경사원(石敬沙員)이 쌀보리 열마지기 받을 동인에게 방매한다’는 내용이 있다.

됨을 증명하고 있다.

낙강과 군역의 문제에 대해 정조 5년(1781, 辛丑)에 순무어사로 왔던 박천형(朴天衡)의 절목에

본도는 멀리 바다 밖에 있어 무예만 숭상하고 유술(儒術 : 유교의 道)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며 의관(衣冠)을 하고 문필을 일삼는 자는 사람들이 곧 천하게 보고 업신여긴다. 청금은 액내생과 함께 학교에서 엄중히 선발한다. 그러나 한 번 낙강하면 즉시 이들을 군역에 충당하고, 또 군역에서도 고역(苦役)에 충당되어, 대대로 내려 오는 업유(業儒)의 집안이 하루 아침에 망해 버리니, 인자(仁者)의 정사가 아니요, 유도(儒道)를 중히 여기는 도리가 아니다.

유생을 경계하여 자책질하게 하는 데에는 자체로 그 벌칙이 있어서 크면 부황(付黃)하고, 작으면 회초리를 친다. 군역으로 유벌(儒罰)을 삼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하였다. 학교의 생도는 액내, 액외의 구분이 엄격하니, 지금부터는 유안(儒案)을 명확히 기록하고 엄격히 구분을 정해서 유생의 이름이 청금, 액내에 있는 자는 비록 죄과가 있다 하더라도 유벌로 다스려서 다시는 군역에 충당하지 말도록 절목을 작성하여 비치하니 영원히 준행하라⁴⁴⁾

라고 하여 한번 낙강하면 군역에 충당되어, 대대로 내려오는 유가의 집안이 몰락하고, 유교의 도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청금·액내

44) 高昌錫, 앞의 책, 1999, p.120.

濟州儒脈六百年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7, pp.174~175.

생은 죄과(罪過)가 있으면 균역에 충당하지 말고, 유벌로 다스리게 하고 있다. 이 절목은 숙종 때 논의되었던 양천변통(良賤變通)에 따라 낙강 교생을 균역에 충당하는 대신 벌포(罰布) 2필만을 납부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던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균역 회피와 관련된 청금유생의 등장과 납속면강, 면강첩 발매 등은 중앙 관료들의 보수화 경향과 관련된다. 선조 역대왕들에 의해 인재 양성을 위한 향교교육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고, 홍학 정책을 위한 관료들의 노력도 근본적 개혁보다는 외형상의 변화를 강조하는 수준에 끝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향교는 인재양성을 위한 홍학기구로서보다는 특권 양반층의 피역장소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던 것이며 청금유생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면 실제적인 향교의 운영을 살펴보기 위해 접생(接生)을 뽑는 내용과 제주향교에서 실시되었던 고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순조 31년(1831) 이에연 목사가 작성한 「초접완의절목(抄接完議節目)」은⁴⁵⁾

1. 접생을 뽑는 백일장은 일년에 두 번 개최하고 봄에는 삼월에 가을에는 구월에 매양 보름날 개최한다.

1. 굴림서원의 접소 20인 내에 시부(詩賦)에서 각 7-8명을 취하고 경서를 강(講)하여 3명, 고풍(古風 : 漢文詩의 한 體)에서 3명 이상 모두 합하여 20명 외에 시부에서 각기 수예차(首預次 : 미리 뽑아두는 사람), 부예차(副預次) 4명을 뽑아

45) ‘接’은 여러 사람이 모여 같은 일을 함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향교에서 공부시킬 학생의 무리를 말한다. 삼성사, 삼천서당, 좌우학당에서 이미 무리지어 공부함을 접살이(居接)한다고 이르고 그 무리들을 접소(接巢)라 불렀다.

여섯달 안에 시·부·경장·고풍에 구별없이 각 소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때) 접으로 올려주고 접이 바뀌어진 뒤에는 따로 구별하지 아니한다.

1. 강(講)을 받음(경서를 암송함)은 삼경과 사서, 소학 중에서 배강하고 통감, 사략으로 강 받을 것은 일체 논하지 아니하며 한권(一篇)을 미쳐 외우지 못한 이는 거안(擧案 : 성적표)할 때 애초부터 기록하지 아니한다.

1. 강이 끝난 뒤 권(篇)수의 많고 적음과 문장의 뜻을 풀이함을 등급을 정하여 가려낸다.

1. 백일장 하루 전에 강거안(講擧案 : 강에 참가하려는 이들의 명단)은 훈장이 정리하여 가려져 있어야 한다.

1. 글도 모르고 글재주도 없는 사람이 방(榜)에 붙어 있으면 바로 뽑아 버린다.

1. 삼성사 십소(十巢) 내에 시와 부를 각기 3명씩, 경서를 강하여 2명, 고풍에서 2명 합쳐서 10명 외에 시와 부에서 각기 예차 한사람씩 뽑았다가 접소에 올려 부친다.

1. 삼천서당 접살이 15명 내에 시와 부에서 각기 5명씩, 경서를 외워서 3명, 고풍에서 2명 합쳐서 15명 외에 시와 부에서 각기 수예차·부예차 2명을 뽑아 접소에 올려 부친다.

1. 좌우학당과 서당에서는 모든 것을 마련한다.

1. 판관과 목사가 만약 일이 있어 접생을 뽑지 못하고 기한이 다 되면(초접 백일장을 실행할 때에는) 훈장이 경내의 문관을 안동하여 거행한다.

하여 접생을 뽑는 백일장은 일년에 3월과 9월 보름날에 두 번 개최하고 강

을 받음(경서를 암송함)은 삼경(三經)과 사서(四書), 소학(小學) 중에서 배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읽은 권수의 많고 적음과 뜻풀이의 결과에 따라 성적표를 작성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예비로 뽑아둔 사람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교생들의 수업내용은 독경(讀經)·제술(製述)·서법(書法)로 나눌 수 있다. 독경에서는 소학(小學), 사서오경(四書五經)외에 근사록(近思錄)·여씨향약(呂氏鄉約)·정속이륜행실(正俗二倫行實)·제사(諸史)·당시(唐詩)·고문진보(古文眞寶) 등을 가르쳤고 그 순서는 먼저 소학을 가르친 다음 근사록·사서·오경으로 넘어갔다. 제술에서는 시(詩)·부(賦)·론(論)·표(表)·송(頌)·명(銘)·책(策)·기(記) 등을 하였고 서법은 해서(楷書)를 주로 하고 행(行)·초(草)도 가르쳤다.⁴⁶⁾ 하지만 제주의 경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서책구입의 대단한 곤란을 느끼기도 하여 조정에서 서책을 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⁴⁷⁾

뽑힌 접생들은 이러한 수업을 받고 선초부터 고강을 받았지만 그 내용은 알 수 없고, 조선 후기 접생들의 고강내용은 헌종 7년(1841) 이원조(李源祚) 목사가 마련한 「삭강절목(朔講節目)」에 자세히 보인다. 즉, 향교의 유생은 정식으로 합격해서 들어온 유생인 접생(接生) 60명 외에 강론(講論) 받기를 원하는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은 모두 뽑아 들였고 시험은 고강의 경우 매달 10일, 20일, 말일에 보았다.

시험일이 되면 향교에서 기숙하며 공부하는 학생인 재생(齋生)들은 갖과 의복을 갖추어 시간에 맞춰 모였다가 목사가 나오면 동서로 나뉘어서 뜰 아래서 공손히 맞이했다. 목사가 명륜당으로 물러나 앉으면 훈장(訓長), 장의(掌議), 직월(直月)은 동쪽 계단에 서고 재생은 서쪽 계단 아래에 서서 마주보고 읍(揖)한 뒤 목사를 향해 차례로 올라왔다. 훈장, 장의, 직월은 앞

46) 濟州儒脈六百年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7, p.163.

47) 『世宗實錄』 세조 17년 9월 21일(기축).

줄에, 재생은 뒷줄에서 목사를 향해 두 번 절하고 목사는 이에 읊(揖)으로 답한다.

시험에 임할 때는 책상을 방 가운데 두고 목사는 북쪽 벽에 훈장, 장의, 직월은 동쪽 벽에 앉고 재생은 서쪽 벽에 앉았다. 직월은 나이가 많고 학문이 높은 이를 2명 뽑는데 그 중 한사람이 책상 앞에 나아가 소리를 가다듬어 주자(朱子)의 백록동규(白鹿洞規)를 낭독하면 재생은 조용히 듣고 난 뒤에 고강했다. 40세 이하는 목사와 뒤돌아 앉아 글을 외우는 배강(背講)을 하게 하고, 40세 이상은 면강(面講)토록 하는데 이 때 음과 뜻풀이 보다 글 뜻을 분명히 하고 구독(句讀)을 숙달되게 하는가를 보아 높고 낮음을 평했다.

별칙으로는 선비가 한번 不(최하 점수)를 맞으면 별로 종이 10장을 내고 두 번 不을 맞으면 접생은 급료를 안 주었다. 이 때 접생이 아닌 사람은 별지 1권을 내며 세 번째 不을 맞으면 회초리를 맞아야했다. 반면 한 번 純通(높은 점수)을 맞으면 상으로 종이 10장을 주고 두 번 純통을 맞으면 종이 한권을 주었다. 세 번째 純통을 맞으면 접생 유생에게는 장학금을 접내의 유생에게는 종이 1권과 10장을 주었다.

이처럼 양반들이 고강 때문에 액내교생이 되는 것을 꺼렸음에도 불구하고 향교와 계속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는 향교가 관학이고 교화와 유학의 상징으로 향교의 출입자체가 신분유지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 응시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향교에 적(籍)을 두고 있어야 했다. 향교는 관학으로써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양반들의 모임 장소로 공론(公論)의 소재지로 정치·사회적 기능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수령들도 원활한 군현통치를 위하여 여론을 수렴하기도 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⁴⁸⁾

48) 梁鎮建, 「朝鮮朝 濟州島 教育施設」, 『耽羅文化』 제 12호, 1992, p.202.

IV. 鄉校의 經濟基盤과 運營

조선 시대 향교의 기본적인 재정적 기반은 향교전과 향교노비였다. 향교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학업활동에 따른 비용, 석전례와 향음례등 제례수행과 교생과 유생의 활동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군현의 등급에 따라 학전과 노비를 지급하였고 유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토지와 노비는 조선 전기부터 지급되었으며 후기에는 이러한 것 외에 여러 가지 경제기반을 소유하고 있었다. 향교의 재정은 군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 돈을 받았던 보인(保人)과 잡역을 처리했던 제역촌(除役村), 그리고 약간의 재곡(財穀) 즉, 식리전(殖利錢) 등이 있었다.⁴⁹⁾

이 장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기반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쓰였으며 변화되는지 살펴보겠다.⁵⁰⁾

1. 鄉校田과 奴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조선시대 향교전에 대한 기록은 『태종실록(太宗實錄)』⁵¹⁾에 처음 보이는

49) 경상감사(慶尙監司) 조현명(趙顯命)이 작성한 것으로, 영조 21년에 반포한 「勸學節目」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각 고을의 향교와 서원에는 둔세와 노공, 그리고 보인과 제역소에서 거두어들인 돈뿐만 아니라 각기 약간의 재곡이 있다. 이것들은 관가에서 특별히 조처한 것에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유생들이 스스로 준비한 것으로 많고 적음과 넉넉함과 부족함이 각기 다르다. 그러나 이 모두는 예상치 못한 수요를 대비한 것이요, 또 선비들이 책을 읽거나 공부할 때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다.(各邑校院 除屯稅奴貢及保人除役所奉外 各有若干財穀 其始或出於官家之別加措置 或出於儒中之自爲辨備 多寡豐薄雖各不同 而要之皆爲校院不時之需 及多士讀書功文時 供饋之資而設 ; 「勸學節目」, 『全南의 鄉校』, pp. 128~129)

50) 향교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李成茂, 「朝鮮初期의 校生」, pp.250~252.

金龍德, 「朝鮮後期 鄉校研究」 pp.249~256.

姜大敏, 「朝鮮後期鄉校의 財政的 基盤」, 『富山史叢』2, 1986.

데 이 때부터 정식으로 지급되었다. 그 후 학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다가 성종 때 『대전속록(大典續錄)』에 다음과 같이 법제화 되었다.

학전은 성균관은 400결, 주와 부에는 10결, 군에는 7결, 현에는 5결⁵²⁾

그 후 『속대전(續大典)』에는

성균관 400결, 사학 10결, 주와 부는 7결, 군현은 5결⁵³⁾

이라 하여 주와 부는 7결, 군현은 5결로 축소되어 지급되고 있다. 이 규정은 이후 고종 2년에 편찬된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없다. 제주 지역의 경우, 정조 2년(1778) 황최언(黃最彦)목사에 의해 학전이 설정되었다는 기록도 보인다.⁵⁴⁾ 제주도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향교전이 지급되었는데, 제주향교는 7결, 대정·정의향교는 5결이었다.⁵⁵⁾

그리고 이러한 학전의 관리는 해당 군현의 수령의 주관과 책임으로 이루어졌다. 『속대전』 제전(諸田)의 학전조(學田條)에,

학전의 세곡(稅穀)을 출납할 때는 감독관의 서명, 날인을 요하지 않고, 본관(本館) 및 본학(本學)이 이를 관장하고 교전(校田)은 수령(守令)이 이를 검찰(檢察)한다.

51) 『太宗實錄』 태종 6년 윤7월 정축조, 「命加給外方鄉校田 教戶曹曰 外方鄉校之田 其數甚少 可除出軍資屬田 以給之」.

52) 『大典續錄』 卷二, 戶曹 諸田條, 「學田 成均館四百結 州府十結 郡七結 縣五結 其收稅出納」.

53) 『續大典』 卷二, 戶曹 諸田條, 「學田 成均館四百結 四學十結 州府鄉校七結 郡縣五結」.

54) 金錫翼, 앞의 책, 1976, 「(正祖二年) 牧使黃最彦…設三邑學田教士」.

55) 『學校謄錄』 3, 현종 5년 윤6월 10일.

『學校謄錄』 6, 숙종 14년 6월 1일.

하였고 『대전속록』에 ‘수령검거(守令檢擧)’⁵⁶⁾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가 되면서 각 향교의 교위전을 보면 양적인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 향교전은 다음과 같다

<표3> 조선시대 향교전 (結-負-束)

향교지역	전지량	향교지역	전지량
목천현	답 4결 56부 전 4부	금의현	답 4부 2속 전 61부 3속
옥천군	5결	직산현	5결
청풍부	3결	천안군	12결
임천군	44부 4속	장성부	4결 50부 6속
고부군	5결	무안현	11결 25부
운성현	답 1결 25부 전 62부 5속	김제군	답 3결 40부 전 37부 5속
해남현	1결 27부 5속	옥과현	1결 77부 5속
광주목	7결	무주부	1결 55부
옥구현	답 3결 83부 9속 전 1결 16부 1속	광양현	답 9결 71부 7속 전 65부 8속
창성부	답 12부 전 7결 73부 3속	상원군	답 41부 9속 전 1결 17부 1속
안성군	2결 63부 7속	양덕현	4결 23부 9속
금성현	4결 95부 5속	은진현	2결
평택현	답 1결 30부 8속 전 81부 2속	산현	답 1결 23부 8속 전 31부 2속
삼화부	1결 52부 4속	부평부	7결
곤양군	7결	함창현	5결
안의현	7결 11부	안동부	10결
동래부	5결 63부 9속	고령현	5결
삼가현	답 12결 41부 4속 전 1결 54부	합천군	5결 1부 4속
웅천현	2결	거제부	6결 61부 7속
함양군	6결 22부 8속		

* 강대민, 『한국의 향교연구』 p.108~109에서 인용.

56) 學田……州·府十結 郡七結 縣五結 其收稅出納……外方則 守令檢擧.

이 표에서 보면 지역에 따라 향교전의 소유량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부·군·현의 등급에 따라 지급한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지급된 토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나 수령이나 유생들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세력은 확보하고 있는가와 관련있다고 생각된다. 지방수령의 향교에 대한 관심여하와 향반 등의 노력 여하에 따라 향교전은 확대·감소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교위전⁵⁷⁾에서 얻어지는 수입, 즉 세곡이나 세전(稅錢)이 향교운영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심지어 거두어들이지도 못하며 매도하고 팔아버리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향교에 소장된 자료로써 경제적 기반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교위전수세정식절목(校位田收稅定式節目)」, 「교전획급절목(校田劃給節目)」, 「교전정세절목(校田定稅節目)」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이 조선후기와 관련된 것으로 조선 전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우선 향교의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교위전수세정식절목」⁵⁸⁾은 그 서두에,

첫 해에 거둬들인 세곡이 거의 20포(包)에 가까웠으나 해마다 줄어들어서 여름과 가을에 거둬들인 것이 3~4석(石)에 불과하다.⁵⁹⁾

라고 하면서 향교 운영에 쓰여져야 될 교위전이 제대로 거둬지지 않음을

57) 교위전(校位田)은 학전(學田)으로, 이를 교전(校田), 학위전(學位田), 향교위전(鄉校位田), 향교전(鄉校田) 등으로 불린다.

58) 1804년(순조 4) 9월에 박종주(朴宗柱) 겸방어사(兼防禦使)가 발급한 것이다.

59) 初年所收幾近二十包矣年縮歲減夏秋所收不過三四石(「校位田收稅定式節目」).

말해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절목을 작성하여, 수세(收稅)를 법식(法式)으로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향교 재임들이 관청에 올린 품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목상으로는 매년 농사의 풍흉을 답사하여 세금을 매긴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한되의 곡식도 와서 바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중략) 이 때문에 폐장이 되다시피 하여 유명무실한 가운데, 금년 가을에 재임이 농작의 상황을 실지로 답사하기 위해 나갔더니, 이른바 이임배와 경작자들이 혹은 빙 둘러 에워싸서 꾸짖으며 욕설을 하고, 혹은 소매를 걷어올리고 크게 소리쳐 꾸짖었습니다. 심지어 마을 노파들은 낫을 휘두르며 교노의 초립과 망건을 찢어 망가뜨리고, 그들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여 유혈이 낭자하니, 보기에 매우 두렵고 불안했습니다.⁶⁰⁾



또 「교전 획급절목」⁶¹⁾ 서두에는,

향교 부근에 있는 약간의 교전들은 오래도록 전당하거나 매도되어 갈아 먹을 수가 없어서 (중략) 무릇 향교 가까이 있는 밭들은 즉시 다 찾아내어 교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전례에 따라 세금을 거둬서 생활하며 역에 종사케 한다. 그러

60) 故名雖逐年執卜而無一升穀來納之事是遣只爲虛文訃滅之資因爲廢場有名無實之中今秋齋任踏驗次出去則所謂里任輩及作者等或圍住詬辱或攘臂咆喝甚至於村嫗揮鎌而裂破校奴之笠網傷其手指流血浪藉所見極甚危怖欲爲回則遮路齎持進退惟谷故不得已草草執卜而收僅止四包皮粟而便同脫身迹歸.(「校位田收稅定式節目」).

61) 1892년(고종 29) 11월에 이규원(李奎遠) 겸찰리사(兼察理使)가 교전을 교노(校奴)들에게 떼어주기 위해 발급한 것이다.

나 가까스로 얻었다가 곧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절목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니, 만약 선례를 좇아서 세를 내어 남에게 팔아먹는 폐단이 있거나 또 권세가가 강제로 빼앗는 실마리가 있으면, 이를 참고하여 관청에 올리고 영원히 준행하여 바꾸지 말라⁶²⁾

하고 하여 각각의 교전을 전당(典當)하거나 매도하여 경작할 수 없고, 교노들이 유리(流離)될 형세에 이르렀을 정도로 그 폐단이 심각함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위전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향교운영에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거둬들이지도 못하는 것은 재임들이 모두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다.⁶³⁾ 특히 교위전을 양반들이 차지하여 경작하고, 흉작 등을 핑계로 조(租)를 납부하지 않으면 향교의 재정은 날로 악화되어 갔다.⁶⁴⁾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려고 「교위전수세정식절목」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완고하고 간교한 무리들이 어리고 약한 유생들을 멸시하여 마음대로 한 것이다. 명색이 세금의 액수를 매기는

62) 則如干附近校田久爲各人典賣而不得耕食將至流離之勢云故凡在校近田庫使卽盡爲刷還分授於校奴等以爲依例納經食力服役而或不無纔得便失之慮故成節目送若有踵前出貫他賣之弊及豪右勒奪之端憑此稟告永遵勿替何事.(「校田劃給節目」).

63) 各邑鄉校 皆有位田 而此田 皆入於齋任輩酒食之費 極可痛也(「治郡要訣」, 『朝鮮民政資料』, p.9).

64) 位田之兩班執畊 最爲巨弊 禾穀之不納 歲入之漸縮 職由於此(「校院矯弊節目」, 10장). 「교원교폐절목」은 향교와 서원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전라감사와 대사헌 및 대사성을 역임한 심이지(沈履之)가 작성한 것이다.

일인데, 일을 꾸며서 자기의 물건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절절이 흉악하고 참으로 통탄스럽다. (중략) 추후에 들으니 금년의 여름 곡식도 보리 흉년이라 청탁하여 낱알 하나 받아낸 것이 없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일이 그치지 아니하면 몇 년 안되어 곧 사전이 되고 말것이니 어찌 한심함이 크지 않겠는가. 당해 좌가장⁶⁵⁾은 품목에 따라 이를 관청에 붙여서 둔전을 만들고 별도로 감색을 배정하여 사실대로 농사의 풍흉을 답사하여 세금을 매긴 뒤, 여름과 가을 곡식을 막론하고 매년 환산한 쌀로 법식을 정하여서 향교에 출급하여 재임의 분향료 및 수복, 제기고직, 식비 등의 급료로 쓰도록 본 고을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미 엄중히 조사하여 처결한 뒤에 절목을 만들어서 1건은 재(齋)에 비치하고 1건은 본 고을에 비치하여 영원히 준행하라.⁶⁶⁾



좌가장이 사전화될 염려가 있어서 관청에 붙여서 둔전(屯田)으로 만들고 감관(監官 : 감시관)과 색리(色吏 : 담당자)를 정하여 농사의 풍흉을 조사한 후 세금을 매기고 향교에 내준다. 그리고 그 재임의 분향료 및 수복(首僕 : 守僕), 제기고직(祭器庫直 : 제기창고지기), 식비(食婢 : 밥짓는 여종) 등의 급료로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위전이 관둔(官屯)으로 바뀌고 있

65) 좌가장은 원래 영둔(營屯)이다. 영둔은 방어영(防禦營)에 소속된 둔전(屯田)으로, 변방의 요충지에 군사를 배치하여 국방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 곳에서 수확된 곡식으로 군량을 저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66) 此莫非頑巧之輩蔑視孤弱之儒生态意所慾名以執稅作爲己物之計節節惡萬萬痛駭同作頭作者惠之里任輩捉來嚴查一併依律嚴處爲乎若或吞吐發明是去等嚴形究問期於取服爲追聞今年夏穀假買稱托牟荒全無粒之捧云若此不已則不幾年乃作私田豈不大可寒心哉同該場假依稟目付之本官作爲屯田而別定監色從實踏驗後毋論夏秋穀每年以折米定式出給於校中以作齋任焚香料及首僕祭器庫直食婢等給料之意發關本官已爲嚴查處決後成節目一件置之齋中一件置之本官以爲永久遵行之地者(「校位田收稅定式節目」).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목류의 말미에는 교위전이 위치한 곳과 교위전의 세금 규모, 재배작물 등이 잘 나타나 있다. 「교위전수세정식절목」 내에 「좌가장 세곡봉하정식(佐哥場稅穀捧下定式)」에

좌가장의 세곡은 매년 여름과 가을에 감관(감시관)과 색리(담당자)가 직접 농사의 풍흉을 답사하여 그 액수를 매기도 록 하였다. 향교에 지급되는 세곡은 풍년에 1섬 9말, 평년이 1섬 3말, 흉작일 때는 9말로 정하였고, 기타 수복(首僕) 2섬, 제기고직(祭器庫直) 6말, 식비(食婢) 6말로 풍년, 평년, 흉작이 구분없이 똑같이 지급한다. 단, 흉년으로 세곡이 3섬에 미치지 못할 때는 거론치 않는다.

그리고 수세 규모(收稅規模)는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규모는 연분 구등법에 따라 상지상년(上之上年)의 경우, 직속(稷粟) 1되부치기의 세곡이 1말 2되이므로, 이를 기준하여 상년 1말, 중년 8되, 하년 6되로 정하고, 이에 따라 녹두(菘豆), 소두(小豆), 콩 [太], 산도(山稻 : 산되), 목맥(木麥 : 메밀)은 1되 부치기의 세곡이 각기 4되이고, 채종(菜種)은 1홉 부치기의 세속(稅粟)이 6되인데, 그 가운데 3되를 감하고 나머지 3되를 바친다. 마자(麻子 : 삼씨)는 1되 부치기의 세금이 피모(皮牟 : 길보리) 6되인데, 이것도 감하여 3되를 바친다. 그리고 피모 1말 부치기의 경우, 세모(稅牟)는 상년이 3말, 중년이 2말 5되이고, 하년은 2말로

한다. 미모(米牟 : 쌀보리)는 상·중·하년 모두 피모와 경우가 같고, 진맥(眞麥 : 참밀)은 상·중·하년을 막론하고 1말 부치기의 세맥(稅麥)을 2말로 한다. 또 초가 한 채의 세태(稅太)는 3되, 초막(草幕) 한 채의 세태는 1되 5홉으로 한다.

「교위전수세정식절목」 뒤에는 좌가장 외에 4개 마을에 있는 교위전에 대해서 「교위전수세이부정식(校位田收稅移付定式)」이라 하여 첨부되어 있다.

원래의 둔전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 가운데 일도·이도·건입 소장(所場)은 북쪽에 치우쳐 있고, 거마로(巨馬路) 소장은 남쪽에 빙 둘러 있다. 그 사이 5리쯤 되는 지역은 예전에 향교에 떼어 붙였는데, 이를 교위전이라 하였다. 가을마다 농사 작황을 실지로 답사하여 향교에서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뒤에 신해년(1791, 정조15)에 이르러서는 절목 내용에 4개 마을을 기록하여 법식으로 정하였으나, 법이 오래 되자 점점 해이해져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래서 작년(1803, 순조3) 가을에 재임이 농사 작황을 실지로 답사하여 기록한 문서를 바쳤으므로 조사하여 합계하였더니, 그 동안의 가까운 해에 비교하거나 혹은 농사의 풍흉을 답사하여 세금을 매기고 거둬들일 때 총수를 어느 한계로 못 박지 말고 원래의 전세에 모두 붙여서 거둬들인 뒤에 참작하여 향교에 떼어 주라고 하였다. 즉 지금까지 향교 자체에서 받아 오던 세곡을 관청에서 받아 향교에 떼어 주라

일도리, 이도리, 건입리, 거마로리(巨馬路里)에 있는 교위전을 언급하면서

풍흉을 답사하여 세금을 매기고, 지금까지 향교 자체에서 받아 오던 세곡을 관청에서 받아 향교에 떼어주라고 하고 있다.

이 4개 마을의 수세 규모(四里校位田收稅規模)는

속종(粟種 : 좁씨) 1되 부치기와 직종(稷種 : 기장씨) 2되 부치기, 채종(나물씨) 1홉 부치기는 각각 1속법(束法 : 묶)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거둘 때 전미(田米)가 1홉 5작이고, 당종(唐種) 1되 부치기와 녹두와 소두 각각 2되 부치기, 콩과 목맥 각각 1말 부치기는 1속법으로 환산한 소출(所出)이 합해서 콩 3홉이며, 조종(租種 : 볍씨) 3되 3홉 3작 부치기는 1속법으로 환산한 소출이 백미 3홉이고, 산도종(山稻種 : 산디씨) 5되 부치기는 1속법으로 환산한 소출이 산미(山米) 1홉 5작이다. 또 와가(瓦家) 3칸 1채는 2부(負)로 환산하고, 초가 3칸 1채는 1부로 환산하되, 매부의 소출은 콩 2되이며, 초막 한 채를 5속으로 환산한 소출은 콩 1되이다.

또 「교전정세절목(校田定稅節目)」은 서두에⁶⁷⁾

춘추대제에 쓸 포우(脯牛)가 부족하여 밤낮으로 걱정하였다. 그런데 방금 삼재(三齋)의 많은 선비들이 올린 공품(公稟 : 稟目)을 보았더니, ‘교전에서 거두는 세금에는 집강의 공용(公用)이 있고 집강의 장태(醬太)가 있으며, 집강의 마료(馬料)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포우 한 조항은 만들어 두

67) 高昌錫, 앞의 책, 1999, pp.107~108.

이 절목은 1902년(광무 6) 7월에 김창수(金昌洙) 군수가 교전의 세액을 정해서 발급한 것이다.

고 그만두지 않을 수 없다. 교전 한 마지기의 세금으로 한 냥씩을 계산하여 세금을 거두면 곧 238냥 9냥이다. 180냥은 춘추 두 제향 때에 사용할 포우의 본전(本錢)으로 삼고, 그 나머지 58냥 9냥은 교임의 공용으로 삼으면, 이는 모두에게 편하고 서로에게 합당한 방도가 될 것이다. 뒤에 공의(公議)에 따라 절목을 만들어 지급하니, 영원히 바꾸지 말라

고 하였다. 그리고 절목은 33개의 지경(地境)으로 나누고 경작자의 직(職), 성명, 경작지와 주거지 구분, 작물, 세전, 매매 관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세전의 총액수는 105냥 1납이며, 이를 경작자들이 봄, 가을로 나누어 납부하고 있었다. 봄에는 세금을 당해 연도 7월부터 거둬들였고, 가을에는 12월 1일부터 거둬들였다. 교전이 위치한 지경은 지금의 용담 2, 3동 즉 현재 제주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예전에는 그 일대가 모두 향교전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향교노비에 대해 살펴보겠다.

향교전과 더불어 노비도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의 하나로, 토지와 마찬가지로 각 읍(邑)의 등급에 따라 달리 배정되었는데, 『경국대전』에는

부의 향교는 30명, 대도호부·목의 향교는 25명, 도호부의 향교는 20명, 군현의 향교는 각 10명⁶⁸⁾

이라 하여 법제화되었고, 이 후 『대전회통』에 까지 변동이 없다.

제주삼읍의 노비수는 제주향교가 18명, 대정·정의현이 각각 4명이었다. 국가에서 각 읍의 등급에 따라 지급한 수에 비해서 노비수는 모자란 형편

68) 『經國大典』 卷5, 刑典 外奴婢條, 「府鄉校三十名 大都護府鄉校牧鄉校二十五名 都護府鄉校二十名 郡縣鄉校各十名」.

이었으나 다른 지역은 노비가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주 삼읍은 양호한 편이었다.

대부분의 교노비들은 향교에서 잡일을 담당하면서 교생과 더불어 숙직을 맡기도 했으며, 처음에는 그 수가 점점 증가하여 갔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교노비가 감소되어 갔다. 현종 4년 경상감사(慶尙監司) 이상진(李尙眞)의 본도폐막(本道弊瘼) 10조에 ‘각읍 및 향교의 노비가 너무 적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 것처럼 노비의 수는 감소 추세였고, 노비가 적거나 아예 없음을 호소하는 향교도 있을 정도였다.⁶⁹⁾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질병 사망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신분제 변동에 따른 것이다. 노비들이 사회기강이 이완된 틈을 타 자신들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는 현상이 나타났고, 교노비들도 이러한 점은 마찬가지였다.⁷⁰⁾

교노비의 감소 원인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교임들의 횡포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교노가 할 일은 오직 성묘수직뿐이다. 그런데 근래에 교임배가 이들을 마치 자신의 노복으로 여기고 한 번이라도 재임을 역임한 사람들은 온갖 사적인 일을 전적으로 이들에게 시킨다. 또 시임 교임이나 전임 교임 중에는 양호(養戶)와 탁부(托夫)를 많이 확보한 후 향교에 앉아서 교위노를 사방으로 보내어 (이들로부터 병작료와 각종 명목이 잡비 등을) 거두어 오도록 한다. (중략) 그러한 까닭으로 교위노들이 이를 견

69) 『學校謄錄』 3, 현종 5년 윤6월, 10일.

『學校謄錄』 6, 숙종14년 6월, 1일.

70) 전형택, 『朝鮮後期 奴婢制度研究』, 1989, 일조각, pp.271~272.

정식중, 「朝鮮後期 社會身分制의 崩壞」,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 1983, pp.327~340.

다지 못하고 줄지어 도망가니 이러한 폐단은 엄히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⁷¹⁾

이렇듯 교임을 지냈던 사람들이 교노를 사사롭게 부리면서 각종 명목의 잡비를 거두어 들이고, 횡포를 부리자 교노들은 도망갈 수 밖에 없었고, 향교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지역의 향교 노비수는 다음과 같다.

<표 4> 조선시대 향교노비 수

향교지역	노비수(口)	향교지역	노비수(口)
정읍현	39	고창현	2
남평현	9	무주부	2
임실현	6	광양현	26
용안현	8	제천군	19
고부군	9	청주목	40
담양부	2	금의현	7
순창군	19	연기현	2
장수현	20	아주현	4
운성현	12	평천현	7
무안현	3	옥천군	20
영암군	38	창성부	5
해남현	27	귀성부	5
김제군	11	중화부	22
태인현	3	강동부	6
화순현	20	강서부	30
구례현	4	양덕현	6

* 강대민, 『한국의 향교연구』 pp.121~122에서 인용.

71) 校奴之役惟在聖廟守直而近來校任輩 視作自己奴僕一徑齋任則凡干私事使 役專責於校奴又 或有時任校任及曾經校任者養戶托夫多數打矣之後來坐校中使校奴輩散四收捧……故校奴輩 不能支堪相繼逃散此弊不可不嚴禁 (『校院矯弊節目』10-1장).

교노비의 수가 향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법전의 수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매득(買得), 생산(生産), 도망(逃亡) 등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러한 향교노비들의 임무는 무엇이였을까.

향교수직(守直)과 사환(使喚), 각종 잡역 등을 담당하였다. 수직은 전직(殿直)·재직(齋直)·고직(庫直)·화직(火直)·산직(山直)등이 있으며, 대성전, 명륜당, 동서재 등의 건물을 보호하고 교생과 함께 윤번숙직(輪番宿直)하는 전직이나 재직, 향교의 재물을 보관하고 전곡(典穀)과 함께 수조(收租)도 하는 고직, 산림(山林)을 관리하는 산직, 화부(火夫)나 시탄(柴炭)을 담당하는 화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환은 식비(食婢), 주비(酒婢), 채비(菜婢)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제향 때의 음식, 제수를 마련하고 교입, 유생들의 공궤(供饋)를 위한 주방의 일을 담당하였다.

그 외 교노비들이 맡은 잡역으로는 제향 때 소용되는 제수를 관에서 받아오는 일, 유생들에 대한 연락, 통문(通文)전달, 교입, 유생들의 부시(赴試)의 배행 등이었다.⁷²⁾

2. 財政運營

향교의 재정은 국가에서 지급되었던 토지와 노비 외에도 별도로 마련한 섬학전(贍學田) 등의 기금에 대한 이자가 있었다. 그리고 철회된 서원의 재원을 향교에 소속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향교에 소장된 「향교섬학전절목(鄉校贍學錢節目)」과 「양재개정절목(兩齋改定節目)」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72) 尹熙免, 앞의 책, 1990, pp.231~239.

姜大敏, 앞의 책, 1992, pp.119~125.

고종 20년(1883) 박선양(朴善陽) 목사가 「향교섬학전절목(鄕校瞻學田節目)」 서두에

나라에 태학이 있고 고을에 교궁 [학교] 이 있는 것은, 선성(先聖 : 孔子)을 제사하는 예제(禮制)가 제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요, 많은 선비들이 글을 읽는 유풍(流風)은 영예에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반수(班首)가 있고 훈장이 있고 여러 집장이 있다. 그러나 말은 바 책임은 매우 무겁고 급료는 매우 박하니, 이는 개탄할 만한 일이다. 재주 없는 내가 외람되이 본 고을을 맡게 되매 돌아보며 항상 보조하여 복돋울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관청의 역사(役事)가 날로 번거롭고 쓸데없는 비용이 많아서 아직 구획할 좋은 계책을 얻지 못하였다. 지금 임기가 다 되어 가니, 달리 조처할 재물을 쌓고 쌓아서 안(案)을 만들었다. 원기(元氣)를 배양할 곳에 이르기까지 수척해 보이는 지경이니,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명륜당과 정문 등 여러 곳의 기와와 재목이 썩고 못 쓰게 되어 비가 썰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장인들을 모아서 예전대로 수리하였다. 변두(鑊豆 : 제기) 가운데 깨져 상한 것은 이를 다 새로 바꾸었다. 겨우 4백 냥의 돈을 마련하여 각 서재(書齋)에 맡기니, 해마다 이자를 불리면서 20냥씩을 취하여 공용의 자금에 보태도록 하고, 본 향교에 이르러서는 봄, 가을의 큰 제향 때에 여러 집장의 반찬값으로 떼어 보탬것으로 일상의 범식을 정하니, 영원히 바꾸지 말고 오래도록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관청의 역사(役事)가 번거롭고 쓸데없는 비용이 많아서 본 고을을 보조하여 복돋을 방법을 모색하면서 이 절목을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기금 400백냥의 돈을 마련하여 향교, 사마재(司馬齋), 경신재(敬信齋), 삼천재(三泉齋) 등에 맡기면서 해마다 이자를 불러 공용의 자급에 보태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절목의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향교 일백냥 (鄉校壹百兩)

사마재 일백냥(司馬齋壹百兩)

경신재 일백냥(敬信齋壹百兩)

삼천재 일백냥(三泉齋壹百兩)

정식(定式)

향교전 일백냥의 일년 이자 20냥을 봄 가을 큰 제향 때에 10냥씩을 나눠주고 그 용도는 왼쪽에 나열한다.

훈장 1냥5냥(訓長壹兩伍錢)

장의 두 사람에게 각각 1냥5냥(掌議二員各壹兩伍錢)

반수 1냥(班首壹兩)

청금유사 두 사람에게 각각 5냥(靑衿有司二員各伍錢)

유사 네 사람에게 각각 5냥(有司四員各伍錢)

섬학유사에게 1냥(瞻學有司壹兩)

수복에게 5냥(首僕伍錢)

섬학전의 경우도 향교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지방관의 향교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섬학전 외에도 향교의 수입은 면강의 대가로 받는 것과 모군(募軍)의 대납전(代納錢)과 향교 소속 외거 노비의 속전(贖錢)등이 있다. 그 밖에 이 건·중건·중수의 공역이 있을 때 지방유림들의 청원으로 필요한 경비를 관에서 지급하기도 했다. 또 군현의 양반들이 유전(儒錢)을 각출하거나 지방 유지의 보조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철회된 서원의 재원을 향교에 소속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고종 20년(1872)에 만든 「양재개정절목(兩齋改定節目)」 서두에

이 고을의 선비를 길러내는 재는 모두 다섯 곳이다. 향교, 굴림서원, 삼성사, 삼천서당, 좌학당이다. (兩齋) 학생수는 65명이다. 이것(兩齋)은 예부터 뛰어난 분들이 창건한 것이다. 혹자는 (목사가) 봉록을 내어 기금을 마련했다고도 하고, 혹자는 세금 받을 땅을 나눠주어 우대하여 부지런히 하고 힘쓰지 아니 함이 없었다고 한다.

근래에 들어 글 읽는 소리가 오래 끊겼고 계속하여 공부한다는 소문을 듣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재(齋)를 유지하는 재정인 돈 때문에 배고픔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 수가) 많으면서 실상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생 수가) 적으면서도 자본을 충분히 하여 우대하는 것이 낫다.

서원과 삼성사를 철회하라는 조정의 명이 있으므로 두 곳의 재(齋 : 굴림서원, 좌학당)는 마땅히 법령에 따라 혁파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원의 설립은 학교[향교]를 뒤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숫자를 향교로 옮기게 하여 학문에 뜻을 둔 선비를 우대하고 좌학당은 철회하여 삼천서당에 합병시켜 정원을 40명으로 정한다. 바다 모퉁이의 작은 섬에 실지로

그 숫자가 적다고 말할 수 없다. 전과 같이 이 곳에서도 해가 다하도록 글을 읽지 않는다면 비록 많다고 하나 또한 어찌하리오. 재(齋)를 지탱할 자료를 왼쪽에 기록한다. (제도를) 고침에 이르러 유교의 등급을 비교하여 (학생수를) 조정하니 혹시 전날과 같이 (사사로운 정리로) 받아들여 적당치 못한 사람을 학생으로 기록하여(錄) 선비의 기강을 문란시키면서 많이 모여들지 말기를 여러분에게 바랄 뿐이다.

지방 고을의 선비를 길러내는 재는 모두 다섯 곳으로, 향교, 굴림서원, 삼성사, 삼천서당, 좌학당이다. 재(齋)를 유지하는 경제적 기반이 미약하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서원을 혁파하라는 명에 따라 그곳의 재원을 향교로 병합시키고 있다.

향교의 재정기반은 토지와 노비가 대부분으로 이외에 섬학전 등이며 이를 소유하게 된 방법은 관에서 마련해주거나 특히, 흥학에 관심있는 목사가 향교를 돕기도 하였으며 양반유생들이 마련한 것이 있었다.

향교의 재정을 나라에서 정식으로 지급하거나 관에서 관행적으로 마련해준 이유는 향교의 원활한 유지와 운영을 위해서였다. 향교가 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과 제례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과 교화를 통한 사회체제 유지에 그 목적이 있었다.

유생들이 경제기반 마련에 노력한 것은 향교가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대변할 수 있는 향촌기구였기 때문이다. 교육과 제례는 물론 정치·사회적 활동을 위해서도 재정기반 확보에 힘을 기울였다.

또 유생들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특히 향교를 중수·중건 할 때인데, 철종 9년(1872) 「향교중수기(鄕校重修記)」에

공사에 충용될 재물은 백성들에게 거두어 들이지 아니하고
두서너트를 가려 재물을 모으고 일을 돕게 하니 무릇 백성들이
기뻐하여 권장되었다. 쌀을 모으고 일을 돕는 일은 많은 선
비들이 주선하였고, 목수를 부르고 벽칠을 하는 일은 모든
공인들이 힘을 합하였다.

라고 하여 조선 후기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향교를 여전히 지원했던 이유
는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대변해줬기 때문이다.

향교의 수입 내용을 보면, 학전에서 나오는 수입이 대부분이다. 이는 조
선시대 향교의 경제기반의 비중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곧 토지가 경제
기반의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향교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조치된 관(官)의
지원과 섬학전 운영이 큰 몫을 차지했던 것이다.

지출은 「교위전수세정식절목」에서처럼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분향료
마련이 가장 우선이고, 수복이나 제기고직, 식비 등의 급료로 쓰였다. 또 「
향교섬학전절목」에서도 봄 가을의 큰 제향 때에 소용되는 비용이 주종을
이루고 그 외 훈장, 장의, 유사, 수복 등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지출도 제례에 소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향교의 처음 설립 취
지인 선비들의 교육에 대한 장려라는 의도는 퇴색되고 피역하고자 하는 무
리들이 모여들어 그 교육적 기능은 상실되었고, 단지 춘추의 석전(釋奠)과
삭망분향(朔望焚香)의 제사를 통한 교화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V. 儒生의 鄉村活動과 社會的 機能

조선시대 향교는 공자와 선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례를 위해 마련된 대

성전(大成殿), 동·서무(東·西廡) 등 문묘와 학생들이 공부하고 기숙하는 명륜당(明倫堂), 동·서재(東·西齋)의 기본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향교의 두 기능인 제례와 교육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향교는 이러한 기능 외에도 양반들의 모임의 장소로써 정치·사회적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양반 유생들의 활동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유생들의 상소나 격문을 중심으로 그 활동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조정에서는 향교를 통하여 각 지방을 원활히 통치하려 하였고, 정책과 명분을 내세워 민심을 수습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사료를 참고할 수 있다.

사신(詞臣)에게 명하여 정개청(鄭介淸)이 지은 논설을 조목마다 공박하여 밝혀서 향교에 반포함으로써 선비들의 풍습을 바르게 하셨습니다.⁷³⁾

이광좌(李光佐)로 하여금 임금의 말씀을 지어 바치게 하고 뒤에 박문수가 교지(教旨)를 받들고 직접 안동부(安東府)에 가서 경내의 사인(士人)들을 불러서 향교로 모이게 하고, 명륜당에 앉아서 유몽서(柳蒙瑞)·권덕수(權德秀)·김민행(金敏行) 3인을 불러들여 교지를 선포하고 덕음(德音)을 낭독하여 전하게 하였다.⁷⁴⁾

이처럼 향교를 통해 유문(諭文)을 반포한 것은 향교가 관학이기도 했지만 양반들이 모이는 향교를 통해서 군현통치의 원활을 기하려고 노력하였다. 향교는 지방 양반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관정(官政)에 대한 의견이 나오

73) 『仁祖實錄』 인조 2년 5월 29일(임오).

74) 『英祖實錄』 영조 4년 4월 29일(기유).

고 공론(公論)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민심을 살피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알릴 수도 있었다. 따라서 관에서 작성한 절목을 향교에 하나씩 반포하거나 보관케 한 것도 향교의 한 군현내에서의 위치나 기능을 이용한 실례라 하겠다.

양반유생 사회에 관계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소식을 접하였을 때 유생들은 향교나 서원에 모여 의논하였다. 통문, 격문, 상소문 등으로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는데,⁷⁵⁾ 그 내용은 다양하다.

불교·도교·서학·동학 등의 이단배격, 선현의 문묘배향이나 승출(陞黜)에 대한 찬반, 조정의 대신이나 감사, 수령 등 관료에 대한 비판과 시비, 서원, 사우의 건립·치폐·사액·배향 문제, 향교의 이건·중건·중수 등 학교에 대한 것, 유교사문의리(儒教斯文義理)에 관한 것, 효자·열녀등에 대한 추천·포상요구, 괴란자(壞亂者)에 대한 처벌 등등이었다. 다시말해 조정의 정치문제로부터 향촌의 교화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에 걸쳐 양반유생들의 관심을 표명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수단으로 통문을 이용하였다.⁷⁶⁾ 또한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격문을 발송하여 의병을 일으키거나 향교의 이건·중건·중수 등 학교에 대한 상소와 군현내 효자·열녀 등 교화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추천과 포상에 대한 요청이 있다.

그러면 격문을 통해 의병을 일으켰던 다음 사례를 통해 제주유생의 활동을 살펴보자.

정의현에 유생이었던 오흥태(吳興泰)는 영조 4년(1728) 이인좌(李麟佐)난의 소식을 듣고 삼읍에 격문(檄文)을 돌려 의병을 모집하였다. 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5) 李樹健, 「朝鮮後期 嶺南儒疏」, 『李丙燾博士九旬紀念論叢』, 1987, pp.583~584.

76) 尹熙免, 앞의 책, 1990, p.211.

다음과 같이 격문을 띄우는 이유는 (중략) 백성과 신하된 사람이 국가의 어려운 때를 당하여 국가를 위하여 죽으면 영광된 일이지만, 흉악한 칼날이 횡행할 때 살아남는 것 또한 욕이 된다. 싸움에서 이기고 질것과 한 몸이 죽고 살 것을 헤아려 그에 따라 나가고 물러선다면 어찌 충신의 마음이라 하겠는가! 이에 삼읍의 격문을 각반(各班), 각청(各廳), 각면(各面), 각리(各里)에 격문을 보내어 (후략)⁷⁷⁾

또 순조 11년(1811) 홍경래(洪景來)가 서북인에 대한 차별 대우와 과거 제도의 문란에 항거하여 난을 일으켜서 대정(大靜) 유생 구제국(具濟國), 양위경(梁渭慶), 송익하(宋益河), 강상훈(姜尙勳), 고한일(高漢日), 박필기(朴弼基) 등이 격문을 발송하여 의병을 모집하고 관(官)에 신고하기도 하였다.⁷⁸⁾

또한 격문을 통한 유생들의 활동 외에 향교 이건에 대한 상소문으로 양반유생들의 관심과 여론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 고을은 성묘(聖廟)의 터가 그럴만한 곳에 있지 못합니다. 지난 갑진년(1724)에는 시내의 서쪽에서 화재를 만나 성의 동쪽 모퉁이로 옮겨지었고, 갑술년(1754)에는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남문 밖 광양으로 옮겼으니, (중략) 선비들의 논란이 있었고 갑오년(1774)이래로 등장(等狀)으로 호소함이 이어졌습니다. (중략) 저희들은 모두다 가을 석전을 기다려 모두 모여 감히 오래도록 쌓인 답답함을 진정하나이다.⁷⁹⁾

77) 鄉校誌編纂委員會, 앞의 책, 2000, pp.611~616.

78) 濟州儒脈六百年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7, pp.815~816.

79) 鄉校誌編纂委員會, 앞의 책, 2000, pp.611~616.

유학(幼學) 양처윤(梁處允)등이 당시 광양에 있던 향교가 성묘로써 적합하지 못하여 읍기자는 내용으로, 유생들의 정기적인 모임인 가을 석전제를 지내고 난 후 의견을 모아 진정하고 있다.

열녀·효녀 등에 대한 추천과 포상에 대해서도 이윤성(李潤成)목사의 장계에 독포리(獨浦里) 조기남(趙己男), 도두리(道頭里) 김중완(金重完)등 백여명이 연명(聯名)으로 등장(等狀)하여 박계곤(朴繼崑) 호자를 추천하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⁸⁰⁾

이처럼 각읍 유생들이 관심과 의사를 표명하고 격문을 돌려 의병을 일으키거나 이견·이설에 대한 등장(等狀), 효녀 추천 등의 장계 등의 향촌사회에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향교는 유생들을 결집시키고, 향촌사회에서의 정치사회적 활동을 보장해주는 활동근거지였다. 그리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유전(儒錢)을 내거나 중건·중수·이건 등을 끊임없이 계속해 온 것은 향교가 바로 양반유생들의 활동근거지였기 때문이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인재양성 및 지방민의 교화 등 향촌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향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주향교의 설치에서부터 인적구성과 운영, 경제기반, 유생들의 활동 등의 순으로 향교소장 문서를 바탕으로 조선후기의 제주향교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향교에 소장된 자료나 여러 기문(記文) 등을 이용하여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80) 乾隆22年(1757) 丁丑 11月 24日 李大將潤成狀啓(교육박물관소장).

제 2장에서는 제주 향교의 설치와 이건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주향교는 태조 원년(1392)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김처례(金處禮)의 『제주향교건학비기(濟州鄉校建學碑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성안의 화재나 지세(地勢) 등의 지리적 문제로 여러차례 이설하였는데, 이런 빈번한 이설은 그 시기가 선조 이후 전국적으로 사학인 서원이 융성하고 향교의 교육기능이 쇠퇴할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제 3장에서는 향교의 직제와 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태조 3년(1394) 교수관의 파견으로 교육활동이 시작되면서 판관이 교수관을 겸하기도 하지만 교육에 전념할 수 없어 유학교수관을 두었다. 그리고 이런 교관들을 도왔던 학생대표인 교임들의 구성을 읍지류에서 살필 수 있었다. 한편 삼읍 향교와 각면에는 학식있는 훈장을 두어 유생들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교생은 인조조에 교생고강에 대한 원칙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양반 자제들이 별도로 청금록을 작성하고 청금유생이라 불렀다. 군역회피와 관련된 청금유생과 면강 등의 문제로 향교의 근본적 의미는 다소 퇴색하고 흥학기구로서보다는 피역장소로 변질되어갔다.

또 접생과 고강의 구체적인 내용은 「초접완의절목」과 「삭강절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생을 뽑는 백일장은 일년에 3월과 9월 보름날에 두 번 개최하고 삼경(三經)과 사서(四書), 소학(小學) 중에서 배강한다고 하였다. 향교의 유생은 정식으로 합격해서 들어온 유생인 접생(接生) 60명 외에 강론(講論) 받기를 원하는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은 모두 뽑아 들였고 시험은 고강의 경우 매달 10일, 20일, 말일에 보았다.

제 4장에서는 조선후기에 교위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그 타개책으로 절목을 발급하고 있는데 「교위전수세정식절목」과 「교전획급절목」, 「교전정세절목」 등으로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위전은 조선 후기가 되면

서 잘 거뒀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도하여 경작할 수 없어 노비들도 유리될 형세에 이르러, 그 폐단이 심각하였다. 그리고 학전과 노비 외에 목사가 섬학전을 마련하거나 서원철폐로 그 재원을 향교로 귀속시키기도 하였다.

경제 기반의 지출은 대부분 향교 유지와 제례수행에 쓰였으며, 이것은 교육과 교화를 통한 사회체제 유지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유생들이 경제기반 마련에 노력한 것도 향교가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대변해 주는 향촌기구였기 때문이었다.

제 5장에서는 양반 유생들의 격문, 상소문 등을 통하여 그들의 향촌 활동을 살펴보았다. 격문을 발송하여 의병을 일으키거나 향교의 이건·중건·중수 등 학교에 대한 상소와 군현내 효자·열녀 등 교화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추천과 포상에 대한 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유생들을 결집시키고, 향교는 양반유생들의 정치사회적 활동을 보장해주는 활동근거지였다.

결론적으로 제주향교는 조선후기 향교의 본래 의미는 다소 퇴색하여 여러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문묘를 중심으로 제례를 수행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향촌기구로써 지방 양반유생들의 사회·정치적으로 이용되어 향촌 사회에서 향교의 사회적 위치를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사료】

『經國大典』

『校院矯弊節目』

『大典續錄』

『大典通編』

『牧民心書』

『續大典』

『新增東國輿地勝』

『朝鮮民政資料』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學校謄錄』



金奉玉, 『朝鮮王朝實錄 中 耽羅錄』, 濟州文化放送, 1986.

金錫翼, 金啓淵譯, 『耽羅紀年』,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備邊司謄錄 濟州記事』, 영인본, 濟州道·濟州史定立事業推進協議會, 1999.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영인본, 濟州道·濟州史定立事業推進協議會, 2001.

『邑誌』 6, 한국문헌학연구소, 亞細亞文化社, 1982.

李元鎭, 『耽羅志』, 영인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1.

李源祚, 『耽羅誌草本』, 영인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9.

——, 『耽羅誌』, 영인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9.

李衡祥, 『耽羅巡歷圖』 영인본, 濟州市·濟州大學校博物館, 1994.

【향교소장문서】

『免講案』 1책, 『免審査正都案』 1책, 『儒生案』 1책, 『儒案』 1책, 『院錄』 3책, 『掌議案』 1책, 『節目』 8책, 『靑衿案』 8책, 『鄉校及各壇留直生案』 1책, 『鄉校待闕案』 7책, 『鄉校品官案』 1책, 『鄉案』 11책, 『鄉品子枝案』 1책.

【단행본】

姜大敏, 『韓國의 鄉校研究』,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高昌錫, 『耽羅國史料集』, 圖書出版 亞細亞文化社, 1995.
高昌錫 외,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尹熙勉, 『朝鮮後期 鄉校研究』, 一潮閣, 1990.
전형택, 『朝鮮後期 奴婢制度研究』, 一潮閣, 1989.
鄭奭鍾,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 一潮閣, 1983.
정진영, 『조선시대향촌사회』, 한길사, 1999.
濟州儒脈六百年史編纂委員會, 『濟州儒脈六百年史』, 學文社, 1997.
濟州鄉校誌編纂委員會, 『濟州鄉校誌』, 濟州鄉校, 2000.
托羅遺事編纂委員會, 『托羅遺事』, 梁氏宗會總本部, 1987.
耽羅遺事編纂委員會, 『耽羅遺事』, 夫氏門中會總本部, 1987.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논문】

姜大敏, 「朝鮮後期鄉校의 基盤」, 『富山史叢』 2, 1986.
姜昌龍, 「18세기 濟州內奴婢의 土地所有- 濟州·大靜無後奴婢 量案을 中心으로-」, 『濟州島史研究』 창간호, 濟州島史研究會, 1991.

- , 「17·18世紀의 濟州鄉村社會構造와 그 性格」, 『濟州島研究』 8, 濟州島研究會, 1991.
- 高昌錫, 「朝鮮時代 濟州的 私學 - 精舍와 鄉學堂을 중심으로-」, 『濟州島史研究』 5, 濟州島史研究會, 1996.
- , 「근대 이전의 제주교육」, 『濟州教育史』, 濟州道教育廳, 1999.
- 金東柱, 「朝鮮朝 濟州地方縣監의 實態分析 - 『제주대정정의읍지』의 先生案條를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2, 濟州島研究會, 1985.
- , 「朝鮮時代 濟州道の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島史研究』 창간호, 濟州島史研究會, 1991.
- 金炯澤, 「19世紀初 內寺奴婢의 革罷」, 『韓國史論』 4, 1978.
- 金奉玉, 「朝鮮朝 濟州的 鄉校와 書院」, 『濟州島史研究』 4, 濟州島史研究會, 1995.
- 金龍德, 「朝鮮後期 鄉校研究」, 『韓國史學』 5, 1983.
- , 「鄉飲禮考」, 『東方學志』 46·47·48합집, 1983.
- 金仁杰, 「朝鮮後期鄉案의 性格變化와 在地士族」, 『金哲俊博士回甲紀念論叢』, 1983.
- , 「朝鮮後期 鄉權의 推移와 지배층의 동향」, 『韓國文化』 2, 1981.
- 金俊亨, 「朝鮮後期 面里制의 性格」, 『서울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82.
- , 「조선후기 丹城鄉校의 地位와 機能」, 『李樹健教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論叢』, 2000.
- 金鎬逸, 「朝鮮後期 鄉校調查研究」, 『中央史論』 4, 1985.
- , 「朝鮮後期 鄉校調查報告」, 『韓國史學』 5, 1983.
- 宋贊植, 「朝鮮後期 校院生考」, 『國民大論文集』 11집, 1977.
- 梁鎮健, 「朝鮮朝 濟州教育思想史 - 道統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3, 濟州島研究會, 1986.

- , 『朝鮮朝 濟州教育思想史 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1.
- , 「朝鮮朝 濟州道 教育施設」, 『耽羅文化』 12, 1992.
- 尹熙勉, 「朝鮮後期 鄉校校任」,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 1987.
- , 「朝鮮後期 額內校生」, 『東亞研究』 제13집, 1988.
- 李建衡, 「朝鮮王朝 鄉校의 興學政策」, 『大邱教育大學論文集』 제5집, 1969.
- 李範稷, 「朝鮮前期의 校生身分」, 『韓國史論』 3, 1976.
- , 「朝鮮前期 儒教教育和 鄉校의 機能」, 『歷史教育』, 1976.
- 李成茂, 「朝鮮初期의 鄉校」, 『漢坡李相玉博士回甲紀念論文集』, 1969.
- 李俊九, 「朝鮮後期 兩班身分移動에 關한 研究」, 『歷史學報』 96, 1982.
- 全泳謨, 「朝鮮後期 身分構造와 그 變動」, 『東方學志』 26, 1981.
- 全炅穆, 「朝鮮後期 校生의 身分에 對한 再檢討」, 『宋俊浩教授停年紀念論叢』, 1987.
- 鄭求福, 「16세기 高文서를 통해서 본 鄉校의 祭儀와 學令」, 『朝鮮時代史學報』 9, 1999.
- 鄭萬祚, 「17·8世紀의 書院·祠宇에 對한 試論」, 『韓國史論』 2, 1975.
- , 「朝鮮後期 良役變通論議에 對한 검토」, 『同德女子論叢』 7, 1977.
- 崔永浩, 「幼學, 學生, 校生考-17세기 身分構造의 變化에 對하여-」, 『歷史學報』 101, 1984.
- 崔允榛, 「高敞鄉校 東·西齋校生案에 對한 검토」, 『宋俊浩教授停年紀念論叢』, 1987.
- 韓東一, 「朝鮮時代 鄉校教育頽廢의 原因에 關한 研究」, 『大東文化研究』 19, 1985.
- , 「朝鮮時代 鄉校教育制度」, 『成均館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1.
- , 「16世紀以後의 鄉校教育制度」, 『大東文化研究』 17, 1983.

<Abstract>

The Management and Actual Conditions of Jeju Local School in the Later Choseon

Oh, Song-hee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eon

This thesis focused on the management and actual conditions of Jeju Local School(called "Jeju Hyanggyo") in the Later Choseon Dynasty. Cheseon established local school in the nationwide "gun" and "hyun" and enlightened people to spread confucian ideas and preserve public order. A local school performed religious ceremonies in front of a confucian shrine and played a pivotal role in a local society by establishing "Myungleundang" and where local aristocrats worked.

I thought a proper understanding of local schools would be useful for gain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local societies. Thus, I progressed this thesis centering on "Jeju Local School". I dealt with matters about its establishment times, office regulation, students, economic foundation, and activities of local aristocrats. To begin with, I clarify this thesis placed the focus on the Later Choseon, and excluded "Jeongeui Local School" and "Daejeong Local School". I discussed the management of "Jeju Local School" on a basis of documents it has, and discovered one facet of Jeju province's local society.

View about the establishment times of "Jeju Local School" are two-fold; One is the first year of the first king of the Choseon Dynasty, and the other is the third year of the first king of the Choseon Dynasty. However, I agree with the former view. "Records on the Tombstone of Jeju Hyanggyo Establishment", "Donggukyeogiseunglam", "Joongbomoonheonbigoo" supports the view. Besides, I could search evidences of the view in "Document about Moving" and "Congratulatory Notes" which show that "Jeju Local School" was established in the first year of the first king of the Choseon Dynasty, and then was moved many times because of fire and geographical conditions.

At the Early Choseon, educational work began through hiring teaching officers. At the Later Choseon, "Jeju Local School" made "Gakmyunhoonjangseolchijeolmok", sent teachers in each "eup" and "myun", and let them teach people. Like in other provinces,

a specific class of confucian students in blue (called "Choenggum Yousang") escaped an obligation to military service in Jeju. The number was on the increase. Thus, "Jeju Local School" made "a blue list" and grasped the number of confucians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I could find out how "Jeju Local School" was run, how resident students(called "Jeopsang") were choseon, and how tests(called "Gogang") were taken through many documents it has.

It also needed economic foundation such as fields and servant to run a local school. However, field which "Jeju Local School" had were not utilized rightly, so it caused many problems. In addition, servants went on setting free. Along with these fields and servants, private fields and money which a province's controller had were sometimes utilized to run a local school. Most of income which a local school gained was utilized in running it and performing religious ceremonies.

Local aristocrats handled local affairs in local schools. They extended their activities by sending an official summons, raising an army, and presenting a memorial.

A local school was not only the central place where religious ceremonies were performed and students were taught, but also the headquarter where local aristocrats explored social and political way and strengthened the ties between them.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2.